

언론 발전을 위한 조사 및 논의 기구 결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부 국회 언론계 누구도 자신들의 이해 관계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계의 대표들로 구성된 공익적 성격의 언론발전위원회를 국회 산하 기구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명칭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개혁도 궁극적으로는 발전을 지향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언론발전위원회'를 사용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언론발전위는 지난 1999년 2월 말 시한부 활동을 끝낸 방송개혁위원회처럼 대통령 자문기구로 구성하는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헌법 체계를 따져 본다면 언론발전위도 대통령 직속기구나 자문기구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지만 과거 권위주의 정권 이후 현재까지의 정부와 언론과의 관계를 고려해볼 때 대통령 산하기구로 구성할 경우 자칫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그렇다고 미국의 허친스위원회처럼 순수 민간기구로 구성할 경우 언론발전위원회에서 마련한 개선방안은 하나도 시행되지 않은 채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 따라서 활동의 실효성과 운영의 재정적, 인적 측면을 고려할 때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 산하 기구로 구성하는 방안이 현시점에서는 일단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국회법 제43조에는 국회의장 자문기구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94년에는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의장 자문기구로 국회제도개선위원회를 운영한 적이 있다.

언론발전위원회는 각계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구성해야 한다. 위원 구성은 현인회(Wiseman)의 방식을 따르되 언론학자·법조계인사·경영학자·시민단체대표·국회의원 등 각계의 대표성을 가진 인사가 참여해야 한다. 위원회 산하에는 운영위원회와 사무국 등을 구성해야 한다. 운영위원회에는 조합주의적 방식 보다는 언론학자·현업대표·변호사·경영학자·시민단체인사 등이 참여하면 좋을 것이다.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4~5개정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현업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여 언론계의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하고 별도의 조사기구를 두어 언론계의 실태를 조사하도록 해야 한다.

위원회는 영국의 왕립언론위원회나 미국의 허친스위원회처럼 2년정도의 한시기구로 활동하면서 2단계의 단기 및 중장기 계획을 거쳐 발전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방송개혁위원회처럼 3개월 간의 일몰제로 운영하다 보면 시한에 쫓겨 의제를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끝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우선 6개월 정도의 단기계획으로 정간법 개정, 여론독과점 방지방안, 신문시장의 정상화 등 법과 제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이후에는 종합적인 언론발전계획을 논의하면 좋을 것이다.

(2) 언론발전위원회의 의제 및 실행방안

언론발전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의제는 많지만 우선 중요한 과제로 등장한 것이 불공정거래의 근절 등 신문시장질서의 정상화, 수용자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언론피해구제 제도의 확립, 언론사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언론인의 전문성 취득을 위한 연수제도, 언론윤리의 확립 방안, 여론독과점의 방지 방안 등이다.

그러나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신문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다룬다는 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여러 차례 논의된 과제뿐 아니라 현업 언론단체는 물론 시민단체 노동단체 등으로부터도 의제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언론시장의 정상화 방안으로는 언론사에 대한 세제혜택 문제, 신문시장의 독과점 문제, 신문사의 불공정거래, 언론사 회계 및 경영의 투명성 확보 등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또 법과 제도의 개선 사항으로는 정간법 개정, 공정거래법 개정, 각종 세법의 개정, 여론독과점 금지법의 제정, 방문판매법의 개정 등을 들 수 있다. 이밖에 언론인의 전문성 확보와 언론윤리의 제고, 언론인의 고용불안 해소 등을 위해서는 언론인연금제도의 도입, 언론인 연수제도의 확충 등을 논의하고 언론수용자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언론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방안, 언론관련 전문법원의 설립, 미디어 교육의 제도화 등이 의제로 오를 수 있을 것이다.

언론발전위의 의결사항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위원회의 활동이 무위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위원회 구성 이전에 논의결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정간법 개정, 세법 개정, 공정거래법 개정 등 법률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은 국회에서 논의해 개정하거나 입법토록 조치하고 신문공판제 도입, 불공정거래 조사, 회계 및 경영의 투명성 확보, 언론 전문법원의 설립, 미디어교육의 제도화 등 정책적인 사안은 정부에서 처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밖에 언론사에게는 자율규제기구의 구성등을 권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도록 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국회 신문사가 전혀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 미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는 의결사항이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 맷음말

신문개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신문사는 물론, 독자에게 필요하고도 유익한 일기 때문이다. 극심한 출혈경쟁으로 공멸의 길을 걷고 있는 대다수 신문사나 신문사들의 잘못된 관행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독자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언론인과 시민이 신문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플랜을 제시해야 하며 정부나 국회도 이에 동참하여 언론발전위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언론발전위를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논의해 합의를 도출해내는 과정은 물론, 합의사항을 실행하도록 하는 데까지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을 것이다. 특히 언론계나 국회가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는 언론발전위 구성이라는 초기단계부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원 130여명이 16대 국회 산하에 언론발전위를 구성하는 데 서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문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고 신문개혁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언론발전위의 구성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언론발전위를 구성하기 전에 정부나 국회의 언론을 바라보는 의식이 우선 바뀌어야 한다. 정부는 언론을 통제하거나 홍보도구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버려야 하며 국회는 당리당략적인 이해관계를 넘어 언론이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드는 데 나서야 한다. 신문사들도 무성의하고 저항적인 자세를 버리고 언론발전위가 언론자유를 보장하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언론개혁의 주체는 언론인이다. 시민단체나 정부 국회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언론인들이 나서 언론개혁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

<참고문헌 및 자료>

- 이효성 손석춘,『죽은 언론 살리기』,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1995년
 일본신문협회 제8차신문법제연구회,『신문의 편집권』, 일본신문협회, 1986년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창립10주년 연구논문집,『한국언론의 독립과 내적 통제구조』,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1998년
 학술단체협의회 제9회 연합심포지엄,『재벌과 언론』, 당대, 1996년
 한국기자협회,『저널리즘』가을/겨울, 1995년
 관훈클럽,『한국언론 2000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2000년
 강경근,『편집권 독립 법제화의 논리와 실제』, 언론개혁시민연대 창립토론회 『신문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자료집, 1998년
 김종서,『언론기업의 법적 규제』, 학술단체협의회,『재벌과 언론』, 1996년
 김학수,『언론사 소유·경영·편집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관훈클럽,『한국언론 2000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1997년
 류한호,『편집권 그 생활과 대안』, 한국기자협회,『저널리즘』가을/겨울, 1995년
 방정배,『편집권 독립-이론적 접근과 실천적 대안』,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죽은 언론 살리기』, 1995년
 손석춘,『한국언론노동운동 10년의 성과와 과제』,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한국언론의 독립과 내적 통제구조』, 1998년
 엄주웅,『편성규약과 시청자 조항』, 한국방송학회 가을철 학술대회 발표문, 1999년
 이효성,『한국언론의 특성과 편집권 확보방안』, 한국기자협회,『저널리즘』가을/겨울, 1995년
 임근수,『편집권의 옹호와 독립』, 한국신문연구소,『신문평론』제2호, 1964년
 한국기자협회, 기자협회보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미디어오늘

언론보도와 인권 : 언론 속에 드러난 인권의식

류한호(광주대 교수, 언론학)

- 미디어는 편향되고 당파적이고 불공정하고 사건을 왜곡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I. 문제제기

언론은 사회 내에 정보와 의견을 유통시킴으로써 정치적 의지와 의견을 형성하도록 해준다. 민주사회는 의견과 지식의 다양성과 그것들 사이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형성·유지되며, 언론은 그것을 가능케 하는 핵심적 메커니즘이다. 단일의 정보와 의견은 사상·의식의 획일화를 가져오고, 이는 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작동을 가로막는다. 자유롭고 다양한 의견은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다양한 언론에 의해 형성·유통된다.

여론이 자유롭게 형성되고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자유롭게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함으로써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어야 한다. 이를 국민의 알 권리라고 부른다. 알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직결되는 민주정치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언론의 다양성과 독립성, 그리고 자유를 기반으로 형성된다.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위탁받은 자유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언론은 자유롭고 다양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는 모든 자유를 자유롭게 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고 부른다. 재산권의 자유, 신체의 자유, 사상·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민주사회의 구성원이 누리는 기본권은 언제든지 국가와 자본을 비롯한 공적사적 권력에 의해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그 침해사실이 알려져야만 시민사회는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 사실이 알려지지 않을 때 그 침해는 사회적으로는 발생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며, 따라서 시민사회는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다. 인권침해에 대한 무지 상태가 누적될 경우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유린과 침해는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결국 민주사회는 존립하기 어렵게 된다.

이 글은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언론이 취하고 있는 인식과 보도태도를 점검하는 데 일차적 목적을 두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그것을 개선하여 언론을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도구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방안을 탐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글에서 설정하고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이 글에서는 언론매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메시지들 중에서도 특히 뉴스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점검하고자 한다. 첫째, 언론이 취재보도과정에서 저지르는 인권침해에는 어떠한 유형들이 있는가. 둘째, 언론은 인권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보도태도를 취하는가. 셋째, 언론의 인권문제에 관한 보도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II. 언론보도와 인권에 대한 접근

언론보도와 인권이라는 주제에 접근하는 길은 매우 복잡하다. 신문이나 방송 같은 언론매체에는 뉴스, 사설, 칼럼, 만화, 만평, 사진, 광고, 연재소설, 드라마, 코미디, 개그, 교양, 오락 등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 이 요소들은 모두가 인권문제와 직간접으로 관련을 맺고 있으며, 따라서 그것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점검하는 일은 매우 난해하다.

한편 인권 개념 자체가 포괄하는 범주도 인간의 삶의 모든 측면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넓다. 인권운동사랑방(<http://www.sarangbang.or.kr/>)의 인권자료실은 다음과 같은 분류체계를 취하고 있다.

첫째, 인권일반,

둘째, 소수자의 권리 : 이주노동자, 아동, 여성, 장애인, 동성애자, 에이즈환자, HIV 보균자, 노인, 난민, 선주민, 인종적 소수자, 정신병환자, 해외동포,

셋째, 시민·정치적 권리의 영역 : 불처벌(과거청산, 의문사,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 사법(공정한 재판), 사형, 자의적 구금, 강제추방, 집회·결사의 자유, 사상·양심·표현의 자유, 양심수/국가보안법/보안관찰법, 종교의 자유, 프라이버시, 고문·가혹행위, 경찰폭력/군폭력, 비자발적 실종, 자유·공정한 선거, 집단학살, 현대판 노예노동.

넷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로서 건강권, 식량, 발전권, 주거권, 자유무역협정과 인권, 교육, 빈곤, 과학기술, 사회보장, 노동, 부채, 인도주의적 원조, 환경.

다섯째, 국제적 인권문제 : 국제인권법, 유엔, 국제회의, 그리고 세계 각국 및 지역의 인권문제.
여섯째, 특별주제의 인권문제로서 전쟁범죄, 자결권, 주한미군, 정신대, 평화, 공무원 및 전문직 종사자의 의무, 국가인권기구, 국제사법재판소 등.

기타 영역으로 인권교육, 남한 인권, 북한 인권, 국내외 인권단체 등이 설정되어 있다.

한국인권재단의 인권도서관 자료실은 다음과 같은 분류체계를 취하고 있다. 국제인권법과 제도, 한국의 인권, 인권에 관한 일반이론/NGO,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 아시아적 가치, 국가인권기구, 인권교육, 시민·정치적 권리, 표현의 자유/ 국가보안법, 사회·경제적 권리, 여성인권/남녀평등, 어린이, 장애인, 소수자의 권리,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권, 과거청산, 북한인권/탈북자, 아시아의 인권, 인권관련회의, 프라이버시권(<http://www.humanrights.or.kr>)

이처럼 인권의 개념이 포괄하고 있는 범위가 매우 광범하고, 그 내용도 복잡하며, 인권과 관련 있는 영역은 무언가 보장하기 때문에 암기의 경지로 차기는 섭외해야 합니다.

언론보도는 인권에 관한 보도활동을 통해 인권을 신장하기도 하고 억압하기도 한다. 인권 억압의 현장을 고발하는 기사는 인권을 신장하는데 도움을 주고, 사회적 약자를 가볍게 대하고 그 대립자들의 견해를 대변하는 기사는 인권을 억압한다. 한편 언론이 그 활동과정에서 스스로 개인의 인권을 유린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언론이 인권을 억압하는 기구로 작동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을 해방하는 기구로 작동할 것인가는 매체 자체의 사상적 지향이나 매체를 둘러싼 정치사회적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언론은 보도를 통해 기본적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사실을 사회구성원들에게 널리 알리고 사설이나 논평을 통해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시민들 사이의 의견을 매개하고, 여론형성 과정을 작동시킨다. 이러한 감시·고발메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민주사회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 즉 인권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감시·견제·고발하는 언론은 민주정치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기본적 토대인 것이다.

인권과 언론보도의 문제는 크게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프라이버시, 명예훼손, 초상권 문제 등 언론이 스스로 일으키는 인권문제, 둘째,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민,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 관한 보도의 문제, 셋째,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인권 관련 정치적 의제나 구체적 인권관련 사건들에 관한 보도의 문제가 그것이다.

인권과 언론보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이제까지 주로 언론이 보도과정에서 스스로 일으키는 문제들에 주로 관심을 기울였다. 부분적으로 일상적으로 인권유린을 당할 수 있는 처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하여 언론이 어떠한 보도태도를 취하는지에 대하여 약간의 관심이 기울여져 왔다. 반면 인권 관련 정치적 의제나 구체적 인권 관련사건들에 관한 언론보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 성과가 거의 없다. 이는 아직 한국의 언론학이 짧은 역사나 학자수의 부족으로 인권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일 정도로 성숙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인권문제가 아직도 언론학자들의 관심을 끌만큼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지 못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III. 인권문제에 관한 언론보도의 특성

언론매체가 제공하는 뉴스는 흔히 사회의 거울이라 불린다. 뉴스는 사회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반영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뉴스는 실제로는 공정하지도 객관적이지도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도 아니라는 분석이 최근 우세하게 등장하고 있다. 뉴스로 보도된 현실은 사회의 권력관계의 한 표현으로 특정의 개인, 집단, 계급의 의견과 가치를 보도한다. 언론의 당파성, 이데올로기 생산·재생산기능, 헤게모니이론, 뉴스의 현실구성기능 등의 담론이 이에 해당한다.

언론매체는 개별 매체의 존재조건이나 성격에 따라 그 보도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한국언론은 일부매체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보수성과 상업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내 보수적 시각을 대변하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언론매체는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안고 있어서 뉴스는 근본적으로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치밀하고 객관적으로 다를 수 없다. 즉 뉴스는 무한정으로 다양하게 존재하는 사회현실 중에서 극히 일부를 취사선택하여 다룰 수밖에 없으며, 그 선택과정에서부터 일정한 가치기준이 작동하고, 그것을 다루는 방식도 매체의 성격이나 관력이 물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진다.

한국언론재단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한국 텔레비전 뉴스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한국언론재단, 1999b, 125-130).

첫째, 한국 TV뉴스는 TV의 특성을 고려한 의제설정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즉 핵심적인 뉴스가 무엇인지를 사회적 의제를 설정하지 못하고 그저 다양한 사건들을 결과중심으로 나열하는 데 그치고 있다.

둘째, 소재와 시각의 다양성 측면에서 분명하게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방송사간 중복기사가 많

고 기사 배열도 일정한 패턴이 있으며 소재의 다양성은 물론 다른 시각과 방식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째, 뉴스의 단순화 문제로 대부분의 기사가 결과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원인이나 대안제시의 측면에서는 매우 미약하다. 네째, 뉴스의 취재원과 채널이 관에 집중되는 관지향적인 보도태도를 취하고 있다. 다섯째, 부정성과 저명성 위주의 뉴스가치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

한국 언론의 인권 관련 뉴스 취급방식은 위에서 정리한 뉴스의 일반적 특징을 대체로 갖고 있다. 그에 덧붙여 인권문제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정치적·사회적·계급적 성격에다 언론매체의 상업성, 선정성, 보수성, 무책임성이 결합하여 상당히 특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언론문제는 주로 사회적 강자와 약자 사이의 관계에서 강자가 약자의 권리(?)를 짓밟는 데서 많이 발생한다. 언론은 그 억압의 사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보도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확산시킨다. 그럼으로써 언론은 인권 보호의 보루 노릇을 한다.

과거 군사독재시절에는 정치권력이 저지르는 인권침해가 일상적으로 일어났고, 언론 자체가 정치권력의 탄압을 받았으며, 따라서 인권문제가 보도내용으로 등장하는 일 자체가 권력의 강력한 통제를 받았다. 인권침해에 대한 감시자 또는 고발자로서 언론기능은 마비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민주화가 진전된 오늘날에도 언론문제는 언론매체의 관심을 별로 끌지 못하고 있는 데 그 이유는 언론매체의 지배이데올로기 생산·재생산기능, 언론인의 보수성, 연성뉴스 추구경향 등 언론 자체의 요인 때문이다.

한국의 언론매체들은 인권문제에 대하여 뉴스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다른 하더라도 작고 가볍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으며, 보도의 시각도 대체로 보수적이거나 부정적이고, 정부나 사회적 강자의 관점을 대변하는 경향이 있다. 언론문제는 뉴스뿐만 아니라 해설기사나 사설에서도 가볍게 취급되며, 따라서 언론에 의해 적극적 의제로 설정될 가능성이 원초적으로 낮다.

나아가서 언론매체 스스로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경우가 많다. 언론은 상업성 추구경향 때문에 무책임하고 무도덕한 보도행태를 일삼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 혐의사실 유포,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초상권 침해 등 인권침해행위를 능동적으로 저지른다.

언론매체의 인권문제에 관한 일반적 보도태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보수적 보도태도와 편향성

언론매체는 통상 사회적 강자의 관점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매체에 등장할 기회도 많이 제공한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들에 관한 정부는 매체에 대해서 적게 취급되고, 그들 스스로 매체를 통해 발언할 기회도 제약된다. 사회적 약자는 미디어를 소유하지도 못하고, 미디어에 종사할 가능성도 적으며, 미디어에 등장할 가능성도 맞고, 미디어를 통해 발언할 기회도 봉쇄되어 있다. 사회적 소수자는 미디어에 의해 호의적으로 취급되지도 않고, 무시되거나 과소대표(under-represent)되며, 별다른 사회적 역할도 수행하지 않고, 고도로 스테레오타입화된 집단으로 묘사되며, 그같은 이미지는 미디어에 의해 더욱 강화된다.

한국의 언론매체들은 대부분 보수적 경향을 띠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매체별로

인권에 대한 시각차가 부분적으로 드러난다. 동일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매체에 따라서 단순 사건으로 취급되기도 하고, 인권문제로 의제화되기도 한다. 예컨대 한겨례신문의 경우 인권관련문제가 발생할 경우 비교적 능동적으로 보도하지만, 조선일보의 경우 인권문제나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경우 그것을 인권문제로 보지 않거나 사회의 보수적 진영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경향이 있다.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사건이나 노동자의 파업에 대한 보도에서 이러한 경향은 강하게 드러난다.

인권문제 중에서도 성폭력이나 어린이, 장애인 문제 등 비정치적이고 일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매체별 차이가 적지만, 학생운동, 노동운동, 여성운동,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법, 5·18이나 부마항쟁이나 4·3 같은 국가권력의 인권침해, 군사독재시대의 의문사 진상규명문제, 수사기관의 불법 연행이나 체포구금 사건처럼 정치적 성격을 지닌 사안에 대한 보도태도는 매체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2. 사건 중심의 보도, 심층보도의 부재

인권 문제에 관한 언론보도는 대체로 사건에 관한 사실을 피상적으로 전달하는 데만 치중하고 사실 속에 내재된 진실과 전후맥락을 보도하는 데는 인색한 경향이 있다. 이러한 보도경향은 사건 중심적(issue-oriented) 보도경향이라고 부르며, 맥락지향적(context-oriented) 보도태도와 구별된다. 통상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때 언론매체는 갈등에 내재된 복잡한 측면을 심층적으로 다루기보다는 그것을 단순화하여 독자나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인권문제가 가지고 있는 복잡성 때문에 그에 관한 보도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이같은 경향이 현실화되는 데에는 인권관련 사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심층 확인취재의 어려움, 언론사가 설정하고 있는 뉴스가치기준, 언론사 내외부의 압력, 한국언론의 일반적 취재환경과 관행, 기자 개인의 가치관 등 복합적 요소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부정적 보도태도

한국언론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언어적 차원의 부정적 보도관행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특히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과 관련하여 많이 나타난다. 노동자들의 파업이나 학생들의 폭력시위 같은 갈등이 발생할 경우 언론매체들은 현상을 과장해서 포장하는 과어휘화나, 부정적인 범주화나 전제를 통해 갈등을 부정적으로 의미화시키는 관행이 있다(백선기, 1995, 69-138쪽).

과어휘화란 노사분규의 과정에 관한 보도에서 불법쟁의, 진통, 난항, 위기, 대립, 무법천지, 극한 대치 등 노동자와 사용자의 대립상황을 실제보다 부풀려서 보도하고, 분규회오리, 쇼크, 명듬, 아비규환, 난동근로자, 파업노동자, 극력가담자, 분규주동자 등 과격성과 폭력성을 부각시키는 기호를 사용함을 일컫는다. 분규종결의 경우 극적 타결, 돌연 수용, 극적 수습, 정부의 대응조치에 대해서는 엄벌, 철퇴, 엄단 등 용어를 사용한다. 이같은 용어사용을 통해 노사분규는 언론매체를 통해 부정적인 것으로 규정되고, 그러한 규정이 확대 재생산된다.

노사분규에 관한 보도에서 당사자들 사이는 긍정적 측면보다 부정적 측면이 부각된다. 노동자, 사용자, 정부, 경찰·검찰 등은 모두가 언론에 의해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경향이 있고, 분규로 인한

시민의 불편과 피해가 지나치게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노사분규는 민주사회 정상적인 행위이기보다, 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유포시킴으로써 독자나 시청자들은 노사분규와 나아가서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고, 행정부나 경찰·검찰 등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도 정당성을 부여하게 된다(백선기, 1995, 104-105쪽).

4. 비보도와 묵살, 축소보도, 지나친 단순화

한국언론은 인권관련 사건에 대하여 보도를 하지 않고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미군의 한국인 상대 범죄나 매향리사건 같은 경우 이 경향은 이처럼 보도하지 않을 경우 아무리 중요한 사건이라도 미디어를 통해 보도되지 않으면 그에 관한 정보가 사회구성원들에게 알려지지 않으며, 그 중요성도 낮아진다. 원초적으로 정보제공기능이 작동되지 않으므로 그에 이어지는 의제설정기능도 작동할 수 없게 된다. 언론매체가 특정갈등에 대하여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무의제화(non agenda setting)가 일어나고, 이는 사회의 기존 지배질서를 유지하는 힘을 발휘하게 된다.

언론매체의 인권문제에 대한 무관심과 비보도는 언론매체와 언론인의 보수성과 권언유착에 기인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체계 안에서 권력이란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결정(decision making) 이외에 무결정(non decision making)을 통해서도 행사된다(Lukes, 1974, 9-57). 인권관련 사건이 발생할 경우 정부당국이나 가해자는 언론에 대한 로비와 압력을 통해 사건을 축소하려고 시도하며, 언론이 이에 화답함으로써 인권문제는 언론매체에 의해 사회적 의제로 대두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또한 인권의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단순사건으로 파악하고, 그 사안의 다양한 측면 중에서 사건적 요소와 현실적 전개과정에만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다. 가령 노동자 파업의 경우 노동자의 인권에 관련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무시되고 단순한 맥락에서 전개되는 사건으로 취급되고 만다. 이러한 보도경향은 인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형성과 인권문제에 관한 올바른 여론형성과 해결, 그리고 사회 전반의 인권신장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5. 미확인보도, 지나친 관급기사 의존

한국의 언론매체는 자체적인 심층취재나 기획기사는 적고 상대적으로 관급기사에 의존하는 경향이 매우 높다. 관급기사의 경우 언론은 확인취재를 하지 않고 보도자료 그대로 보도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국가보안법 관련사건의 경우 언론은 정부기관이 제공한 보도자료를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표내용 그대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은 일반범죄의 수사권을 가진 경찰, 검찰의 통상적 수사체계를 벗어나 특수한 수사기관에서 다루는 경우가 많다. 가족이나 일반인들은 물론 변호사마저 접근이 차단된 상황에서 피의자가 수사를 받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인권유린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피의자의 연행, 수사내용의 배포는 전적으로 수사기관의 선택에 달려 있고, 수사결과 발표 이전에는 피의자의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수사당국은 보도자료를 배포할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와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의 경우 언론보도의 방향과 구체적 보도내용은 수사당국이 제공하는 보도자료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결국 국가보안법 관련 당사자나 그 가족, 친지들의 주

장은 사소한 것으로 평가되거나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기자들은 수사기관의 발표에 대해 보충취재를 하기도 어렵고 당사자가 구금되어 외부와 접촉이 차단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을 할 수 없다. 언론은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보도자료나 대변인을 통해 기사거리를 수집하고 발표할 수밖에 없게 되고, 차후에 허위, 왜곡, 또는 날조로 밝혀지는 등 오보나 부실한 보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게 된다(박영상, 1995, 10쪽). 이 경우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초상권 침해 등 또 다른 인권침해가 발생하게 된다.

6. 언론매체가 저지르는 인권침해

언론매체는 그 활동과정에서 수시로 인권을 침해한다. 대표적으로 침해되는 경우는 피의자 혐의 사실 유포,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초상권 침해 등이 있다. 언론매체의 원초적 선정성, 마감시간의 압력 등에 기인하는 언론매체의 인권침해는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도 그렇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등 시국사건의 경우 당사자에게 더욱 큰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 한국사회에는 시국사건 관련자에 대한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실형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이미 주변에서는 기피인물로 규정되고, 차후에 사회에 복귀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가중된다.

1987년 박종철사건에 관한 보도나 권양 성고문사건에 관한 보도에서처럼 언론이 검찰이나 경찰 또는 정보기관이 제공한 보도자료를 확인작업을 거치지 않고 보도하였는데 사후에 그것이 허위 왜곡 또는 날조로 밝혀질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수사당국의 잘못된 발표는 당연히 문제가 되지만 그것을 치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보도한 언론사의 잘못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된다.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피의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명이나 얼굴이 공개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범죄혐의자에 대한 보도에서 언론에 의한 인권침해는 자주 일어난다. 가령 살인이나 폭력 등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렇게 추정되는 사람의 경우 언론은 그를 범죄자로 확정하고, 그의 얼굴을 무방비로 노출시키며, 호칭에서도 경칭이 생략된다. 사회내 집단간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병리현상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범죄의 흉악성과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겉모습만 그 맥락은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IV. 인권에 관한 언론보도의 사례

1. 노동문제에 관한 언론보도

한국언론의 뉴스보도는 여러 부문, 특히 노사관계, 특히 노사갈등에 관한 보도에서 현저하게 균형을 상실하여 결국 노동자들의 인권실현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보도경향은 편파보도, 보도의 불균형, 불공정보도, 왜곡보도, 비객관보도, 비사실보도, 오보 등으로 묘사된다(백선기, 1995; 이원락, 1989).

노사관계 보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다음과 같다(류한호, 1999).

첫째, 노동자와 노동운동이 매체의 주요 의제가 아니다.

한국언론에서 노동자와 노동운동은 그들이 쟁의를 일으키고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좀처럼 다뤄지지 않는 주제이다. 사회적으로 유사한 비중을 지닌 경제활동 주체인 기업의 경영자나 기업 자체에 관한 뉴스는 많지만 그 파트너인 노동자와 노동운동은 뉴스 소재로 등장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민주노총 같은 진보적 노동운동의 경우 그 정도는 더욱 심하다.

이와 같은 뉴스보도양식은 노동자의 삶과 주장, 노동운동, 그리고 노동 그 자체가 지닌 사회적 중요성을 폄하하며, 이러한 보도를 접하는 시민들도 노동문제를 중요한 주제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즉 현실 생활세계에서 노동이 지니고 있는 중요성에 비추어 뉴스에 바탕하여 구성된 시민들의 인식은 그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들은 일상 속에서는 노동문제를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관해서 사회적 동료라는 시각에서 관심을 갖기보다는 무관심할 수밖에 없다.

어떤 사상이나 사물이 뉴스의 주제로 등장하면 사회적 중요성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하게 된다. 역으로 뉴스에 등장하지 못하는 사회집단이나 사상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다. 박정희·전두환 군사정권 시기에 노동운동, 학생운동, 그리고 다양한 민주화운동이 뉴스에 등장하지 못했던 것은 이처럼 존재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정치권력의 압력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한편 노동자가 뉴스에 등장한다 하더라도 주로 쟁의, 파업, 사회불안, 경제위기 등과 연관될 때에 한정된다. 1960년대 이후 한국경제를 발전시킨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노동자라는 우리 사회 내의 상식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매체에 등장하는 노동자는 사회불안의 원천으로 표현되고 있다.

민주사회는 흔히 다원사회라 부른다. 민주사회에서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사회집단들이 다양하게 형성되고, 이 집단들이 각기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신의 뜻을 주장한다. 노사관계에서 노동자와 사용자는 근본적으로 대립적인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들의 교섭과정에서 갈등이 벌어지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러한 주장이나 갈등 같은 사회적 행위는 당연한 사회현상이며, 우려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대립적인 사회집단들이 서로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갈등이 해결되는 제도적 장치와 문제해결관행이 정착되는 일이다.

그런데 한국언론에서는 노사간의 갈등 자체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문제시하는 독재정권 시대의 보도관행이 아직 거의 수정되지 않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보도관행은 곧 노사관계에서 사용자에게만 정당성을 인정해주고 그에 대립하는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현상유지적이고, 보수주의적이며, 반민주적인 사회질서의 유지로 이어진다. 언노련의 강령에서 천명하고 있는 “민주적인 노동운동을 강력 지원하며 타산업노동자들과의 광범한 연대”라는 목표는 아직까지 언론현장에서는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둘째, 노동자와 노동운동에 대한 보도는 편향·왜곡되어 있다.

현대사회에서 노사간의 갈등은 필연적이고, 양자 사이에 균형이 잡혀야만 민주사회라 할 수 있다. 독재체제에서는 노사관계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우세를 점한 상태에서 노사갈등이 내면적으로만 존재했을 뿐 외면화되지는 못했다. 정치권력은 근로기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설립을 가로막았고, 분규가 발생했을 경우 검찰·경찰 등의 권력장치를 동원하여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사용자 편을 들었다. 언론매체에서도 노사간 갈등에 관한 정보는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1987년 이후 노동운동이 상당히 자유화되면서 조합들이 많이 설립되고 그중에서도 과거의 어용성을 탈피하여 민주노조의 가치를 드는 조합들이 많이 생겨났다. 노동조합이 자율성을 많이 확보하면서 사용자들을 상대로 비교적 강력하게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단체교섭은 봄철 일정시기에 집중되는 흐름도 나타났고, 조합들 사이의 연대행동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 교섭과정에서 타협이 잘 되지 않아 파업으로 치닫는 경우도 있다. 단체교섭과 교섭과정의 파열음은 산업사회의 너무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를 보도하는 언론은 갈등이 민주적이고 적법절차에 따라 해결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줄 책임을 지고 있다.

한국언론의 노사분규 보도는 극도로 편향되어 있다. 노사분규보도들은 보통 다음과 같은 논리구조를 갖는다. 즉 노사분규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고, 경제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을 때에는 모처럼 맞이한 호기를 망칠지도 모르는 철없고 위험한 장난이나 반국가적·반민족적 범죄행위처럼 묘사한다. 경제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노동자들에게 과다한 임금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고, 따라서 노동자들의 임금인상과 작업조건 개선요구는 기업가들이 애써 추구하는 효율적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행위라는 식이다.

보도에서는 또한 노사분규의 원인을 누가 제공했는지는 통상 묵살되며, 특히 불성실교섭이나 합의 파기 등과 같이 자본측이 본규의 근본원인을 제공했을 경우 그 정도는 더욱 심하다. 분규가 발생하면 일단은 노동조합의 과격성 때문이며, 그 배후에는 전노대나 민노총 등 과격한 노동단체들이 자리잡고 있고, 그들의 제3자개입 혐의가 짙다는 등의 지적을 한다. 여기에 기업가도 잘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족을 덧붙여 양시양비론적 논리를 취함으로써 부분적이나마 외형상 균형을 맞추려 한다.

특히 파업이 일어났을 경우 언론은 일반적으로 그 피해액을 매출손실로 산출하여 보도한다. 매출손실이란 산정방법이 불분명하지만 파업기간 동안 작업을 했을 경우 가능한 생산총액을 말한다. 이를테면 명절 때 공장을 쉬면 생산액이 얼마만큼 줄어드는지와 동일한 계산방법이다. 분명한 것은 그 액수는 그 기업의 이윤과는 별 관계가 없다는 점이다. 가령 특정기업의 연간 생산액이 3조 6천 5백억이고, 순이익이 36.5억일 경우 하루 생산을 중단하면 매출손실은 100억이고, 순이익에는 1,000만원의 손실이 온다.

백선기(1995: 44)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신문들은 노사관계에 대하여 주로 정부와 사용자의 관점에서 편파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 보도에서 노동자집단은 폭력이나 일삼고, 억지주장을 펴는 이기적 집단으로 묘사되며, 이에 반해 정부나 사용자는 노동자의 편의를 위해 애쓰는 집단으로 묘사된다. 또한 대부분의 보도에서 노사관계는 자율성을 갖고 있지만, 지나친 폭력적 행위가 일어날 경우에 한해서 사회안정과 질서유지 차원에서 이른바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백선기(1995: 69-138)는 노사분규에 관한 기호학적 분석을 통해 한국의 신문들이 노사분규를 ‘전쟁상황’, ‘범법행위’, ‘질병’, ‘재해’ 등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노사분규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형성하고 최대한 이를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가치관을 유포시키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노사분규 보도의 밑바탕에는 시민들이 노사분규 자체는 이유야 어쨌든 싫고, 불편하고,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따라서 반드시 사전에 막아야 하는 것으로 보도된다.

그에 따르면 한국 신문들은 노사분규의 과격성, 시민들의 불편, 경제에 대한 악영향 등에 주목을 하고,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정상적인 분규타결행위나 합의도출과정, 그리고 노동자들의 제안사항

이나 요구조건 등에 대해서는 거의 취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보도경향은 문제 해결적이기보다는 갈등유발적인 보도방식이라고 하겠다.

셋째, 매체를 통한 노동자의 발언기회는 심하게 제약되고 있다.

사회집단과 매스미디어의 관계는 매스미디어가 주도적으로 특정 사회집단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측면과 아울러 특정사회집단이 미디어에 직접 등장하는 측면도 있다. 예컨대 노사분규가 발생했을 경우 분규에 관한 기자의 취재 뿐만 아니라 분규 당사자들을 미디어에 등장시켜 그들의 대립적인 주장을 비교적 균등하게 들어볼 수 있다.

한국의 언론은 이 부분에서도 심각하게 편향되어 있다. 노사갈등국면에서 통상 기업 소유자나 경영자 특히 재벌그룹 회장이나 경총 간부는 흔히 매체에 등장하지만 노동조합이나 간부의 주장은 언론에 직접 등장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러한 관행은 언론을 통해 매개되는 시민들과의 관계에서 자본측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국면을 확보하고, 노동측은 그에 대항할 기회를 확보하지 못하는 불공정을 낳는다. 그 결과는 자본의 정당성 강화와 노동측의 정당성 약화, 그리고 그에 따른 불공정한 기존 사회질서의 유지로 나타난다.

2. 여성에 관한 언론보도

드라마에 나타난 여성에 대해서는 피상적인 연구들이 존재하지만 여성에 관한 언론보도를 연구한 언론학 문헌은 찾아보기 어렵다. 언론매체는 여성을 다룰 때 현실의 객관적인 묘사가 아니라 가부장적인 사회질서를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

언론매체의 소유와 경영, 그리고 편집 모든 분야에서 남성은 여성을 압도한다. 따라서 언론매체에 나타난 여성의 이미지는 남성우위의 사회적 가치관을 반영하고 여성은 남성이 장악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중요하지 않은 일을 담당하는 집단으로 묘사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는 최근 시중의 관심을 끌었던 사건들을 중심으로 언론매체가 여성을 어떻게 취급하고, 여성의 인권이 어떻게 유린되는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가. 린다김 사건에 관한 보도

2000년 5월 이른바 린다김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는 선정성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황색저널리즘의 사례라 하겠다. 국방부가 추진한 백두사업 관련 비리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린다김의 존재는 선정성을 좇는 '언론의 표적이 되기에 적절했다. 사건의 본질인 막대한 국익이 걸려 있는 국방관련사업을 둘러싼 비리와 부패, 그리고 향후 적절한 재발방지대책의 마련 등 진정 중요한 부분은 초점 밖으로 밀려나고, 여성로비스트와 천직 고위인사의 섹스스캔들이 언론보도의 초점이 되었다. 사건의 본질과는 관계없이 한국 언론은 주로 스캔들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보도하고 당연한 결과로서 국민들의 시선도 그쪽으로 쏠리고 말았다.

이 사건을 보도한 언론매체들은 처음부터 편지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단정적으로 기사를 쓰는 논리적 비약을 저질렀다. 언론매체들은 또 복잡한 군수관계 의혹에 확실한 근거나 사실확인 없이 린다김이 전면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보도하기도 했다. 마치 한 여성의 몸으로 한 나라의 국방관련 의사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같은 분위기를 만

들어낸 것이다.

그 과정에서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린다김의 개인신상, 과거사, 로비방법 등 모든 것이 속속들이 파헤쳐지거나 사실확인조차 하지 않은 무책임한 추측성 기사가 언론매체의 지면과 화면을 채웠다. 린다 김의 집과 가족관계와 개인사는 신문·방송 가릴 것 없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심지어 그 집 창문과 대문이 열리는 모습에까지 언론은 카메라를 들이댔다. 백두사업 로비라고 하는 범죄와 직접적 관련 없이 저질러지고 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광범한 사생활 침해와 짓밟힌 인권에 대하여 언론은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럼으로써 린다 김의 명예와 프라이버시는 보호받을 여지가 없이 언론의 선정경쟁에 의해 철저하게 훼손되거나 파헤쳐졌다. 물론 이 과정에서 로비 당사자인 전직 장관의 명예와 프라이버시도 철저하게 훼손되었다.

나. 백지영 사건에 대한 보도

2000년 11월에 노출된 백지영 비디오 사건은 연예인의 사생활이 어디까지 보호되고 어디까지 공개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뜨거운 논란을 냈다. 스포츠신문의 선정보도는 당연히 문제가 되었지만, 특히 지상파방송인 SBS는 연예프로그램 <한밤의 TV 연예>에서 백지영 비디오 일부를 자료화면으로 사용함으로써 공중파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무책임한 방송을 했다. 또한 이 프로그램에서는 비디오에 등장한 상대남자 김모씨의 인터뷰를 여과없이 내보내기도 했다. 선정보도로 인하여 비디오의 주인공들은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을 당했다.

한편 백지영 비디오에 대한 보도과정에서 한국사회의 이중적 성기준이 노출됨으로써 다른 인권문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당사자들 중에서 여성은 도덕적 비난을 받고, 가수활동을 중단당하는 사태를 맞았으나, 남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도덕적 비난이나 사회적 제재가 가해지지 않았다.

남성 우위의 사회분위기를 반영한 이러한 보도관행에 대하여 여성단체들이 처음으로 법적으로 대응하기도 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 여성의 전화연합 등 여성단체들은 백지영 사건에 대한 언론사들의 선정적이고 명예훼손적 보도태도를 문제삼아 SBS의 사장과 연예프로그램인 <한밤의 TV연예> 담당 PD를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내용은 해당 프로그램이 벗은 남자의 뒷모습을 배경화면으로 내는 선정 보도를 했고, 상대 남자라고 자인한 남성의 주장을 여과없이 내보냈으며, 모르는 상태에서 촬영됐다는 백지영의 주장을 거짓말로 받아들이도록 의도적으로 편집했다는 점 등이다. 이 고발에 대하여 SBS측은 모든 언론매체가 보도하여 사회적 관심이 증폭된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 남자의 인터뷰를 첫 보도했다는 이유로 고발되는 것은 억울하다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3. 소수자에 관한 보도

가. 홍석천 사건에 대한 보도

2000년 스스로 동성연애자임을 밝히고 나선 홍석천의 커밍아웃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는 극히 선정적이었다. 홍석천은 커밍아웃 직후 다수의 언론매체에 의해 즉각 부도덕한 연예인으로

규정되고 방송출연이 취소되었다. 홍석천씨가 고정출연 중이었던 프로그램은 KBS <야! 한밤에>, 라디오 시트콤 <우리집 식구는 아무도 못말려>와 MBC의 <뽀뽀뽀> 등이었다.

홍석천의 커밍아웃에 관한 언론보도는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과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보호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일으켰으며, 사회적 통념이란 다수의 기준으로 사회적 소수자의 존재와 행위를 재단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었다.

나. 외국인노동자에 관한 언론보도

외국인노동자들은 한국사회의 발전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존재들로서 인권의 사각지대에 무방비로 방치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한국언론의 보도는 통상 그들의 범죄 행위에만 초점이 맞춰지며, 위험한 존재로 규정되어 전달된다.

외국인노동자들의 사회·경제적 기여나, 한국인 사업주들의 임금체불, 비인간적 근로조건과 취급 방식 등은 통상 언론매체의 관심대상이 아니다. 즉 외국인 노동자들에 관한 올바른 정보는 무시되고, 문제해결을 위한 올바른 의제설정과정도 언론매체에 의하여 전개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러나 몇 가지 주목할만한 보도의 예가 있는데, 1999년 9월 CBS는 "짓밟히는 필리핀 여성들의 코리안 드림"을 보도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특히 여성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권침해 양상을 통렬히 비판했다.

4. 인권유린현장에 대한 언론보도

수사기관의 임의동행 등 불법연행 사건이나 교도소 내부의 비인간적 처우, 군사독재시대 의문사 진상규명 사건 등에 대해서 한국언론은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기본적으로 보도하는 기회와 그 양이 적으며, 보도한다 하더라도 축소하여 보도하는 경우가 많다.

1999년 1월 국제신문은 "인권유린의 현장 … 죽쇄·쇠사슬"은 경남 함양경찰서가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이전에도 불구하고 규정에도 없는 죽쇄를 구입해 피의자들에게 마구잡이로 채우고 있다는 내용을 고발했다. 이 보도로 전국 경찰서에서 죽쇄가 폐기처분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취재팀은 한국앰네스티가 수여하는 언론상을 수상했다.

5.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관한 언론보도

국가보안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한국의 언론은 그다지 호의적이거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겨레를 비롯한 일부언론에서는 시민단체들이 법의 제정과 개폐를 둘러싸고 전개하는 다양한 요구를 비교적 충실히 보도하는데 비하여, 일부 다른 매체들은 이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방송의 경우 인권법안에 대하여 비교적 균형잡힌 시각을 가지고 보도하고, 이를 둘러싼 토론프로그램을 편성하기도 하였다.

조선일보는 2001년 1월 15일 사설 "국보법이 인권과 무슨 관계가 있나"에서 국보법의 존재가 "법적 실효성보다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그 상징성이 더 크다"며, "일부 문제가 있다면 손질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북한 노동당 규약과 가혹한 북한형법의 존재에 대한 상용적 조치 없이 무조건

적 상호주의의 포기는 극히 위험한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강력한 개정반대의사를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안 제정과정에서 언론매체들은 대체로 시민단체들과 첨예하게 맞선 법무부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보도태도를 취했다. 법무부가 제출한 인권법 시안에 대하여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강한 부정적 의견을 표명했지만, 언론매체들은 대체로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보도태도를 취했다.

V. 인권에 관한 언론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권문제에 관한 언론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양하다. 그것은 기자 개인적 차원의 문제, 언론조직의 조직적 차원의 문제, 언론 외부의 자본주의 사회질서에서 권력과 자본과 언론의 상관관계에서 파생하는 문제 등으로 나눠 볼 수 있다. 그것들은 또한 언론조직 내부차원과 외부차원의 문제로 나눌 수도 있다.

언론이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보여주는 다양한 문제는 일차적으로 매체의 성격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언론매체는 이미 대자본가의 수중에 장악되어 있으며, 지배계급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를 생산·재생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윤추구욕에 기반한 상업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언론사 내부의 관료적 통제구조, 소유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내부구조, 편집의 독립성의 부재, 사건 중심 보도, 신속한 보도를 추구하는 경향, 언론사들 사이의 과당경쟁은 언론매체로 하여금 인권문제를 외면하고 경우에 따라 언론매체 스스로 인권침해를하도록 유도하는 힘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다른 구조적이거나 제도적인 문제는 젖혀두고 기자집단 자체 요인들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기자의 인권문제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인권의식의 부재.

기자들이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지 못하고 사건기자의 관점에서 인권문제를 바라보다 보면 눈 앞에 드러나는 사건 전개에만 관심을 갖고 그 뒤를 흐르는 심층적 의미를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 지나친 노동강도는 기자들로 하여금 특정 문제들에 대하여 깊이 있는 공부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주된 요인이다. 마감시간의 촉박과 과중한 업무로 기자들의 잘못된 판단이나 사소한 단어사용의 오류가 빈번히 일어난다. 그에 따라 사실이 왜곡되고 진실이 은폐되는 경우가 많다. 기자들의 노동강도의 완화와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기자의 양성 등이 필요하다.

언론계를 지배하는 뉴스 가치판단기준에 따르면 사회의 저명인사나 고급관료, 기업가 등 사회적 강자들은 저명성과 중요성을 갖고, 따라서 이들이 기자들의 주된 취재대상이다. 이들을 주요 취재원으로 삼고 이들과 친밀한 인간관계를 유지해야만 고급정보를 확보하기 쉽고, 취재의 편의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구미에 어긋나는 기사를 썼을 경우 기자는 매우 난처해지며 향후 취재의 편의를 제공받기 어렵다. 정보공개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특종을 바라보고, 기자로서 치명적인 낙종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장악하고 있는 이들과 기사를 통해 호의적인 관계를 맺어야만 한다. 따라서 이들을 비판하는 기사는 좀처럼 게재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강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기자들도 자연스럽게 그들의 관

점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획득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기사를 작성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이다. 노동자의 관점은 더 이상 기자들에게 친숙한 세계관이 아닌 것이다.

셋째, 기자들의 소극적 취재관행. 발표저널리즘은 한국언론의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자들은 출입처에서 제공한 뉴스 릴리즈나 통조림된 뉴스를 그냥 그대로 보도하거나 부분적으로 가공하여 보도하는 데 급급하며, 독자적으로 취재하여 보도하기 위한 노력에는 인색하다는 지적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출입기자단 문제나 지나치게 강한 기자들의 노동강도 등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지만, 기자 개인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는 극복할 수 있다.

인권문제 보도에서 소극적 취재관행은 정부당국이나 사용자의 발표문은 원문 그대로 보도하고, 반면 당사자나 가족의 주장이나 요구에 대해서는 보도를 거의 하지 않거나 한다 하더라도 축소보도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VI. 결론
언론의 인권문제에 관한 보도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인권상황이 개선되고 사회 전체의 민주화가 성취된다면 그 내용도 더불어 충실히 해칠 수 있다. 정치·경제·사회의 민주화와 언론민주화는 올바른 보도와 언론을 인간적 도구가 아닌 인간해방의 도구로 자리잡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 환경이다.

좀 더 긍정적이고 사회기여적인 언론보도를 위해서 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한다. 언론인은 적어도 인권의식을 강화하고, 인권문제에 관하여 식견과 전문성을 높이며, 인권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공정보도와 균형, 중립, 객관보도의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문제해결자적 입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인권문제를 고민하는 시민단체들은 언론에 대하여 좀 더 능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언론매체를 인권단체들의 고민을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동의를 구하는 기구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언론매체에 대한 일상적 모니터활동을 통해 매체에 반인권적 보도가 나타날 경우 즉각 반응을 보이거나 고발하는 능동적 자세가 필요하다. 인권단체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언론매체들의 보도태도를 고발하고, 그 대안적 정보를 시민들과 언론사 구성원들에게 알림으로써 적극적인 진실경쟁을 벌이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인터넷언론 뿐만 아니라 기존 매체들과 연대하여 인권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인권에 관한 정보의 양을 늘리며, 나아가서 토론의 장으로 활용해나가는 작업도 필요하다. 인권단체들이 연대하여 독자적인 일반성있는 매체를 설립하는 것도 구상할 만한 일이다.

인권에 관한 언론보도를 개선하는 힘은 결국 인권침해를 당한 당사자들과 그 곁에서 그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좀 더 인간이 인간대접 받고 사는 세상을 일궈보자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온다.

참고문헌

- 임수경, "국가보안법 사건의 언론보도와 인격권 보호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1997.7).
- 백선기,『보도의 기호학』,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1995).
- 한국언론재단,『TV저널리즘과 뉴스가치(I)』, 서울: 한국언론재단(1999).
- 한국언론재단,『TV저널리즘과 뉴스가치(II)』, 서울: 한국언론재단(1999).
- 박영상, "공적 자료와 오보,"『언론중재』 1995년 겨울호, 언론중재위원회(1995).
- 류한호, "한국언론의 노사문제 보도 :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사회과학연구』 제10집, 광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1998).
- 강대인, "언론의 공정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언론민주화를 위한 언론학 교수 모임 주최 언론문제 세미나 <민주화와 언론의 공정성> 발표논문(1992).
- 강명구,『한국 저널리즘 이론』, 서울: 나남(1993).
- 류한호, "내적 언론자유의 이론과 실천," 서울: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1993).
- 방정배,『커뮤니케이션 변혁·사상·이론』,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1996).
- 백선기,『보도의 기호학』, 서울: 성균관대 출판부(1995).
- 유재천, "공정성, 무엇이 문제인가," 언론민주화를 위한 언론학 교수 모임 주최 언론문제 세미나 <민주화와 언론의 공정성> 발표논문(1992).
- 이민웅,『한국 TV저널리즘의 이해』, 서울: 나남(1996).
- 이원락, "보도의 공정성,"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실천위원회 전국회의 발표문(1989).
- 이효성,『정치언론』, 서울: 이론과 실천(1989).
- 이효성, "언론민주화운동과 공정보도,"『저널리즘비평』, 3/4호, 한국언론학회(1992).
- 한진만,『한국텔레비전방송연구』, 서울: 나남(1995).

사단법인 남북농업발전협력민간연대

농구조조 ◇

1. 설립 취지

사단법인 남북농업발전협력민간연대 (이하 남북농발협)는 한반도의 식량자립이 매우 절박한 문제이며,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남과 북이 협력해야 한다는 취지아래 1998년 6월 12일 출범하였습니다. 특히 남북농발협에는 그 동안 북한의 식량난에 대하여 인도주의적 동포애에 입각해 식량지원사업을 꾸준히 벌여왔던 대부분의 주요 농민, 시민, 사회, 종교단체 및 주요인사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1999년 4월 23일자로 사단법인화 하였습니다.

농업기반의 와해로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과 대외의존도가 높은 남한 농업의 현실은 남북간 농업교류와 협력사업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남북 농업협력사업은 식량이 무기화되고 있는 국제 추세 속에서 민족의 살길을 찾기 위한 방편인 동시에, 남북 화해와 평화의 기운을 확산시키는데도 유력한 방도입니다.

남북 농업협력사업의 효율적 전개를 위해서는 민간단체간 자율적 협의와 조정 및 정보의 교류가 필수적입니다. 민간 차원의 자율조정 기능의 활성화를 기초로 정부와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남북농업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 접근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남북농발협의 설립취지입니다.

2. 조직 연혁 및 구성

◇ 연혁

- 1998. 3. 3 남북농업발전과 협력을 위한 민간단체협의회 준비위원회 결성
- 1998. 4. 13 남북농업협력과 민간의 역할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 1998. 6. 12 남북농업발전과 협력을 위한 민간단체협의회 창립
- 1998. 7. 1 남북농업발협 부설 남북농업발전정보센터 준비위원회 결성
- 1999. 4. 23 사단법인 남북농업발전협력민간연대 설립허가
- 1999. 5. 7 제정경제부장관 지정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지정

◇ 조직구성

제주인권학술회의 공동본부 조직구성

참가단체

겨레사랑북녘동포돕기범국민운동본부

대한YWCA연합회

원불교남북한삶운동본부

참여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홍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임원명단

• 이사장

이재정 (전 성공회대학교 총장)

보통

• 이사

김숙희 (대한YWCA연합회 회장)

명진 (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

이길재 (남북농발협 씨감자추진본부장)

이내수 (농민신문사 사장)

이일균 (명지대 사회교육원장)

장원석 (단국대 농과대학장)

조성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집행위원장)

• 감사

김동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 사무국

김운근 (농촌경제연구원 북한농업연구센터장)

박홍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이남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이운숙 (원불교 전농교당 교무)

이창복 (겨레사랑북녘동포돕기범국민운동 공동대표)

정성현 (남북강원도 교류협력기획단장)

황민영 (한국농어민신문사 사장)

조성범 (사무총장)

이호진 (제주인권학술회의 공동본부 조직구성)

3. 주요사업

<1> 남북 농업협력 시범사업 추진

- 개요 : 시범사업 및 관련분야 농업기술협력을 통해 이후 대규모 남북농업협력사업 진출을 대비
- 사업내용 : 북한 협동농장과 공동재배 / 지역별 작부체계 확립을 위한 시험재배 / 우량씨감자 공급 및 관련기술 지원
- 추진방식 : 주요 사회단체, 농업대학, 기업 등과 컨소시엄 방식으로 공동진출 모색

<2> 남북농업교류정보센터 운영

- 개요 : 남북농업 정보 제공과 토론의 활성화, 민간차원의 북한 농업 지원활동 안내를 위한 정보센터 운영
- 사업내용 : 남북농업협력관련 민간실천 프로그램 개발, 소식지 발행, 홈페이지 운영, 토론회 개최 등
- 추진방식 : 전문가와 단체회원이 참여하는 주요 분야별 포럼 운영

<3> 남북농업협력의 중요성을 알리는 국민운동 전개

- 개요 : 농업문제 및 남북농업협력의 중요성을 알리는 국민운동 전개
- 사업내용 : 「한강감자꽃축제」개최 (2000년 한강감자꽃축제는 성황리에 마침, 참조 : <http://www.potato.or.kr>)
- 추진방식 : 정부, 서울시, 언론사, 사회단체, 농민단체 등과 연대하여 범국민적으로 전개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총동무(사) 범민족)

입시요주 8

1. 창립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는 1994년 7월 2일 54개의 민간단체가 모여 창립한 민간통일운동단체로, 남과 북이 7.4남북공동성명에서 합의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으며, 온 겨레가 함께 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넘어 머리를 맞대고 뜻을 모아내는 열린광장입니다. 약칭은 '민족회의'입니다.

2. 강령

선조들이 지켜온 흥익인간의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민족은 빛나는 문화를 이 땅에 가꾸어왔다. 근현대사의 소용돌이 속에 외세에 의해 강요된 민족분단이 반세기에 이르고 있으나 그간 우리 민족의 통일을 향한 노력은 한 순간도 멈춘 적이 없다. 오늘 나라 안팎의 정세는 통일운동의 일대혁신과 전진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앞선 통일운동의 성과를 이어받고, 7.4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확인된 조국통일 3대원칙과 6.15남북공동선언에 따라 대중의 능동적인 참여에 기초한 통일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는 온겨레의 힘과 지혜를 모아 민족의 통일을 이루어 21세기 민족 응비의 기틀을 마련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강령을 내외에 천명한다.

1.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원칙으로 하여 민족통일을 실현한다.
2. 남과 북이 서로 존중하고 함께 번영하는 통일국가를 이룬다.
3. 외세의 내정간섭을 배격하고, 남북 해외 온 겨레의 단결로 민족자주를 실현한다.
4. 통일을 가로막는 온갖 법적 제도적 요소를 개선하고 통일문화를 이룬다.
5.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평화협정체결, 남북한 상호군축, 외국 군대의 단계적 철수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실현한다.
6. 일본의 군사대국화 등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들을 경계한다.
7.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세계의 모든 세력과 연대한다.

3. 조직체계

- 상임고문
- 상임의장
- 공동의장

■ 집행위원회

- 사무국
- 감사
- 후원회

4. 사업내용

■ 8.15 기념 통일행사

- 1994년 [제5차 범민족대회] 및 [인간띠잇기 대회] 참가
- 1995년 100여개의 민간 단체를 망라하여 [8.15 50주년 민족공동행사] 개최
- 1996년 제1차 [평화통일민족대회] 개최
- 1997년 제2차 [평화통일민족대회] 개최
- 1998년 [민족의 화해·평화·통일을 위한 대축전] 개최
- 1999년 [겨레손잡기 대회] 참가
-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2000 통일맞이 대축전] 참가

■ 평화연대 활동

- 1994, 1995년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국제대회] 개최
- 1999년 [헤이그 국제평화회의] 참가
- 1999년 [한반도 냉전청산과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대회] 개최
- 2000년 [서울 ASEM NGO회의 평화분과] 활동
- 2000년 비폭력운동단체 David Hartsough 초청간담회 개최

■ 민족사 바로알기운동

- 1995년 각계인사 399명 [일제잔재 청산, 민족정통성 확립을 위한 3.1 민족자주선언] 발표
- 1995년 10월 3일 [광복50주년 개천절 기념 단군한배달 큰잔치] 개최
- 1998, 1999년, 2000년 [개천절 기념 민족공동행사] 개최
- 2000년 우키시마호폭침사건진상규명 및 추모사업

■ 청소년 통일교육

- 1999년 [제1회 사이버 통일백일장] 주관
- 2000년 2월 [제1회 새천년맞이 청소년 금강산 통일기행] 주관

가와의 국교 수립이 본격화되면서 개별국의 대북 지원도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남한은 작년 겨울에 이미 쌀 30만 톤을 차관 지원하였고, 금년 상반기 중에도 차관 방식의 옥수수 20만 톤, 무상지원 옥수수 10만 톤을 지원할 예정이다. 일본도 금년 중에 50만 톤의 쌀을 지원하며, 이미 지난 1월 말에 1만톤의 쌀을 실은 선박이 북한으로 출발하였다.

그동안 북한에 지원을 해온 유엔기구 및 국제 NGO, 그리고 남한의 민간단체들은 인도적 지원이 장기화되면서 긴급 구호 차원의 식량지원과 함께, 보다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북한의 역량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을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 전환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역량구축 지원사업은 주로 농업 및 보건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국내 민간단체들에 한정하여 대북 지원활동의 일반 현황과 최근 지원활동의 특징, 그리고 지원사업의 분야별 현황을 살펴보고, 이후 대북 지원사업의 발전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민간의 대북 지원활동의 일반 현황

북한 식량난은 우리 민족의 비극적 사건이면서 또한 냉전의 두터운 얼음벽을 녹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 동안 민간단체들의 대북 지원 활동은 북한의 기근으로 인한 고통을 부분적으로나마 직접 도울 수 있었다는 점 이외에도 하나의 사회운동으로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긍정적 평가가 가능하다. 반면 남북관계의 특수 상황으로 인하여 북한 식량난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효율적 지원을 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다.³⁾

1995년 9월에 대북 인도적 지원활동을 시작한 이래 2000년 12월말까지 민간의 대북 인도적 지원금액은 1,116억 원에 이른다.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간의 지원규모는 북한동포돕기운동이 전국적으로 거세게 일어난 1997년 이후 급증하였고,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2000년에 또 한번의 증가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부의 지원규모는 3,550억 원이나, 1995년 9월 이전에 김영삼 정부가 지원한 쌀 15만 톤의 금액인 1,850억 원을 제외하면 정부의 실제 지원규모는 1,700억 원이다.⁴⁾

작물	면적 (ha)	생산성 (t/ha)	생산량 (t)
쌀	535,000	3.16	1,098,000
옥수수	496,000	2.1	1,041,000
감자 (2000년)	187,00	10.00	*470,000
이모작 보리, 밀 (1999/00년도)	123,000	2.00	246,000
기타 작물	65,000	1.0	65,00
총 생산량			2,920,000

※ 갑자 생산량은 187만톤이며, 이를 4:1로 환산하면 47만톤이 됨.

3) 이종무, “대북 이도지원운동의 협화과 과제”, 남북농업협력추진협의회 제3차 회의 발표자료, 1999.

4) 대북 인도지원에 대한 통계는 북한이 국제사회에 지원을 호소한 1995년 9월을 시점으로 하여야 한다. 남한만이 1995년 9월 이전의 지원실적을 통계에 산입시키고 있는데, 이는 김영삼 정부 시절 대북 지원에 소극적이라는 민간 및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해 정부의 지원실적을 과대포장하기 위한 편법적인 것이다.

<표-1> 정부 및 민간의 대북 지원 실적

연 도	정 부	민 간
1995년	1,850억 원	1.9억 원
1996년	24억 원	12.4억 원
1997년	240억 원	182.1억 원
1998년	154억 원	275.3억 원
1999년	339억 원	223.6억 원
2000년	943.6억 원	420.7억 원
계	3,550.6억 원	1,116억 원

대북 인도적 지원운동은 IMF 경제위기 이후 대폭 위축되어 20여 개内外의 대북 지원단체 중심으로 진행되었다.⁵⁾ 비록 1997년과 같은 전 국민적 참여의 시기는 지나갔지만 대북 지원단체들은 이 기간 중에 지원단체로의 전문성과 북학과의 애정적 창구를 확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난 1년간 대불 이도적 지워운동의 흐름을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대북 지원규모가 급증하였고, 지원물자의 대부분은 독자창구 단체들에 의해 조달되고 있다. 2000년의 대북 지원규모는 420.7억 원으로 전년 동기의 223.6억 원의 1.85배에 달하며,⁶⁾ 그 중 독자창구 단체의 지원금액이 397.6억 원으로 전체의 94%에 이른다. 전체 지원규모가 증가한 것은 작년의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하여 대북 인도적 지원운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되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특기할 것은 일반 국민들의 소액기부는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러한 증가세를 결과시킨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 고액기부자들의 참여가 있어 가능했다는 점이다. 독자창구 단체의 지원 비중이 이와 같이 크게 된 이유도 이들 단체들이 지속적인 대북 지원사업을 통해 대외 인지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전문성과 안정적인 대북 창구를 확보하고 있어 대북 지원을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기업, 기타 단체 및 개인의 기부를 받는 것이 용이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표-2> 2000년도 주요 민간단체의 대불 지원 실적

5) 1999년 4월에 대북지원 단체들간 정보교류를 위해 '대북지원단체민간모임'이 만들어져서 월 1회의 정례 모임을 진행하여 왔고, 이를 기반으로 2001년 1월에 '대북지원민간단체협의회'(약칭 북민협)가 결성되었다. 현재 북민협에는 26개 단체가 가입해 있고, 북한과 독자창구로 지정되어 있는 13개 단체가 모두 소속되어 있다.

6) 1999년 한적의 비료 지원분을 제외한 순수 민간지원액이 100.3억 원과 비교하면 약 4.2배가 증가한 것이다.

창구	단체명	금액	품목
독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83.1억 원	씨감자, 손수레, 젖염소, 김굴, 계란 등
	한민족복지재단	77.8억 원	의료기자재, 구급차, 빵 제조설비 등
	남북어린이어깨동무	70.8억 원	구충제, 장난감, 두유, 영양과자 등
	남북나눔운동	49.1억 원	분유, 운동화, 의류, 온실자재 등
	유진벨프로젝트	37.1억 원	결핵약, X-Ray기계 및 이동검진차 등
	국제옥수수재단	23.1억 원	비료, 옥수수종자 등
	월드비전	17.2억 원	온실기자재, 비료, 밀가루, 의류 등
	한국이웃사랑회	16.7억 원	비료, 사료용 콩, 농약분무기 등
	천주교민족화해위원회	11.3억 원	옥수수, 농약분무기, 의류, 분유 등
한적	감귤보내기제주도민운동본부	10.1억 원	감귤
독자	한국제이티에스	6.8억 원	설탕, 분유, 밀가루, 비료 등
한적	남북농업발전협력민간연대	6.2억 원	비료, 씨감자, 농약분무기 등
	기독교감리회 서부연회	3.3억 원	비료생산컨테이너, 밀가루, 의류 등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2.4억 원	농약분무기, 옷감, 의류 등
독자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2.0억 원	기초 의약품, 밀가루, 콩기름 등

둘째, 대북 지원 사업이 긴급 구호 차원의 단순 물자지원에서 협력사업으로 전환되었다.

1999년과 2000년의 농업 및 보건의료 지원금액을 비교하면 농업은 10.5억 원에서 83.8억 원으로 7.9배, 보건의료는 21.8억 원에서 165.6억 원으로 7.5배가 증가하였고, 이는 전체 지원금액의 59%에 해당한다. 현재 농업 지원 분야에는 국제옥수수재단, 남북농업발전협력민간연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월드비전, 한국이웃사랑회, 한국제이티에스, 등 6개 단체, 보건의료 지원분야는 유진벨프로젝트, 한민족복지재단,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등 3개 단체, 임업 지원분야는 평화의숲이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셋째, 남한에서 남아도는 잉여물자들의 지원사업이 활발해졌다.

1999년 말부터 2000년 2월까지 계란 2천만 개, 제주도 감귤 4,200 톤이 지원된 것을 시작으로 금년에는 미역 1천 톤이 북한에 지원되었다. 이들은 모두 과잉생산으로 국내 생산자들이 원가 이하로 판매하거나 막대한 저장비를 지출하고 있는 품목들이다. 이러한 잉여물자의 지원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효과와 함께 국내의 공급가격을 안정시켜 국내 생산자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남과 북이 원-원 할 수 있는 방식이다. 남북관계가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한다면 이 방식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여진다.

넷째,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대북 지원사업이 활발해졌다.

7) 1999년 한적이 비료 4만 톤을 지원한 123.3억 원은 순수 민간지원으로 볼 수 없어 농업분야 지원실적에서 제외하였다.

강원도는 농업용 비닐 27,000 톤을 지원하였고, 강원도지사가 방북하여 남북 강원도 사이의 교류 협력사업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냈다. 또한 제주도는 북한동포돕기도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2000년 12월에 감귤 3천 톤을 지원하였고, 완도 및 고흥군에서는 김·미역보내기운동본부가 결성되어 금년 3월까지 미역 3천 톤을 북한에 지원할 계획이다.

다섯째, 민간의 대북 지원사업에 대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지원이 이뤄졌다.

정부는 1999년 10월 27일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였다. 이 규정에 따라 이재민 구호 및 피해복구 지원, 식량난 해소를 위한 농업개발지원, 보건위생의 개선 및 아동과 노약자 지원, 산림복구 및 환경보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 규정에 따라 8개 단체에 대해 총 54.14억 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 결정이 내려졌다. 또한 정부는 2001년 2월 10일에 이 규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였는데, 주요 개정내용은 대북지원 사업자의 지정 및 해제 절차, 국내 농수산물의 대북 지원 시 수송비 및 조작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항의 신설이다. 그 동안 민간단체들은 국내 잉여 농수산물을 지원하고자 해도 과다한 물류비로 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규정의 개정으로 앞으로 잉여 농수산물의 대북 지원이 매우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표-3> 200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결정 내역

분야	단체명	금액	사업 내용
농업 분야	남북나눔운동	7.65억 원	국수공장 운영 및 지원
	국제옥수수재단	8.68억 원	옥수수 증산 지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4.44억 원	축산 협력 지원
보건 의료 분야	월드비전	7.98억 원	채소생산 지원
	이웃사랑회	3.54억 원	우유생산 지원
	한국제이티에스	5.39억 원	농업지원 및 영양식 공장 운영
한민족복지재단	유진벨	7.92억 원	결핵 퇴치 사업
	한민족복지재단	8.54억 원	제약공장 설립
합계		54.14억 원	

3. 대북 지원사업의 분야별 현황

(1) 일반 구호 분야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에 있어 일반 구호 분야는 가장 기초적인 분야이다. 북한은 식량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생필품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단체들에게 다양한 물품을 지원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지원단체들은 일반 구호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일반 구호 분야가 점하는 비중을 지원단체 별로 구분하면 첫째, 기독교감리회 서부연회 남북나눔운동,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천주교민족화해위원회와 같은 종교단체들은 지원물자의 90% 이상이 일반 구호 분야의 물자이고, 둘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월드비전, 한민족복지재단과 같이 초창기부터 지원사업을 전개하면서 지원규모가 큰 단체는 전체 지원규모에서 일반 구호 분야의 비중이 작아지긴 했지만 절대 지원액수는 아직도 큰 규모이며, 셋째, 농업 및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 지원단체들의 경우에는 일반 구호 분야의 지원규모가 금액과 사업 비중의 양 측면 모두 매우 미미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일반 구호 분야의 특징은 지원물품이 매우 다양해진다는 점이다. 초창기의 옥수수, 밀가루 등 식량 중심에서 지금은 의류, 분유, 이유식, 학용품, 비누, 신발, 담요, 건빵, 감귤, 미역, 계란 등으로 지원품목이 계속 확대되었다.

일반 구호 분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는데, 하나는 단순 물자지원으로 대부분의 단체들이 이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국수공장, 영양식 공장 등의 구호물자 생산 시설을 북한 내에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 분야에서는 후자인 구호물자 생산 시설의 운영사업이 지속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문적 영역에 속하는 사업이다. 이 방식의 사업은 현재 한국 월드비전, 한국제이티에스,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남북나눔운동이 진행하고 있다.

이 방식을 처음 시작한 것은 월드비전과 천주교 민족화해위원회이다. 월드비전은 1996년 10월에 평안남도 평원군에 월 50 톤을 생산하는 국수공장을 가동하여 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어린이 1만 명에게 매일 한 끼씩의 국수를 제공하고 있다. 이후 평원군의 국수공장이 성공을 거두게 되자 평안북도 선천, 안주, 개천과 강원도 원산, 함경남도 신창에 추가로 5개의 국수공장을 가동하게 되었다. 월드비전은 국수공장의 가동을 위해 각 공장마다 국수기계, 1.5 톤 트럭 1대, 발전기 1대와 함께 국수공장용 원자재로 매월 중국에서 밀가루, 전분, 메밀가루 50 톤을 제공하고 있다.⁸⁾ 천주교 민족화해위원회도 1996년 북한의 평양 장충성당 구내에 국수공장을 설립하여 주민들의 구호에 활용하고 있는데, 이 작업은 미국에 있는 한국계 미국인 성직자와 신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진행되었다.

1998년 4월에는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가 황해북도 사리원시 만금동에 금강국수공장을 설립하여 가동에 들어갔는데, 이 공장은 매일 7,700 그릇의 국수를 생산하여 각급 학교와 유치원, 병원 등에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 국수공장에는 근로자 50명이 1일 3교대로 근무를 하면서 생산을 하고 있다.

또한 한국제이티에스도 같은 시기에 나진 선봉에 어린이 영양식 공장을 설립하여 나진 선봉의 116개 탁아소와 유치원의 11,000여 명의 어린이에게 매월 1인당 3kg의 영양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한국제이티에스는 이전까지 영양식 공장의 가동에 필요한 원자재를 중국에서 구입하여 왔는데, 1999년부터 원자재를 북한에서 현지 생산된 곡물로 대체하는 작업을 추진하여 왔다.

그 외에 남북나눔운동도 2000년부터 평양 소재 봉수 국수공장을 통해 고아원, 유치원, 탁아소 등의 어린이 1만 명과 유아 4천명에 대한 영양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8) 월드비전의 국수공장 사업은 성공적 모델로 평가되어 현재 북한에는 국내외 지원단체들에 의해 40여개의 국수 공장이 가동되고 있다.

<표-4> 구호물자 생산시설 운영 현황

구분	한국월드비전	한국 JTS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계약 당사자	국제월드비전 조선큰물대책위원회	미국 뉴욕 JTS 나·선행정경제위원회	평불협 미주본부 조선불교도연맹
가동 시기	1996.10 (평원) 1997.12 (5개 지역)	1998.4	1998.4
공장 위치	평원 개천, 안주 선천, 원산, 신창	나진 선봉	황해북도 사리원시
수혜 인원	약 6만명	약 1만명	약 8천명
모니터링	국제월드비전 직원의 정기 방문, 북한의 생산, 분배 보고	중국동포 3명 상주	평불협 미주본부 관계자 방문

(2) 농업 지원 분야

현재 대북 농업 지원사업은 국제옥수수재단, 남북농업발전협력민간연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월드비전, 한국이웃사랑회, 한국제이티에스 등 6개의 전문 지원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각기 고유한 자기 사업영역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국제옥수수재단은 옥수수 종자 개발 및 증산 지원사업을, 남북농업발전협력민간연대는 감자종자 개량사업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감자 증산 지원, 임업협력 시범사업과 젖염소 시범목장 지원사업을, 월드비전은 수경재배를 통한 채소 및 씨감자 생산 지원사업을, 한국이웃사랑회는 젖소목장 지원사업을, 그리고 한국제이티에스는 쌀 및 옥수수 생산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가. 국제옥수수재단

국제옥수수재단의 농업 지원사업은 옥수수 종자 공동 연구사업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나누어진다. 이 사업은 '북한 적응형 슈퍼옥수수'의 공동 연구를 통해 우수종자를 개발하여 북한 식량난 해소에 기여하고, '북한 적응형 슈퍼옥수수'가 보급될 때까지 북한옥수수마을 결연사업 등으로 남한의 옥수수 종자, 비료 및 선진 육종기술 등을 지원하여 북한 농업의 자생력을 확보해주기 위한 농업구조 개선 사업이다.

국제옥수수재단은 농업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998년 5월 4일부터 16일 사이에 방북을 하여 북한 농업과학연구원과 '농업기술협력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을 통해 북한농업과학연구원은 옥수수 시험재배 면적 1천ha를 제공하기로 했다. 북한과의 계약 체결에 이어 동년 6월 18일에는 옥수수 시험재배 및 공동 연구를 위한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을 통일부로부터 승인 받

았는데, 이 협력사업은 농업분야에서는 남북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협력사업 승인이다.

국제옥수수재단은 최초의 남북 공동연구사업을 진행하면서 북한의 여러 지역을 1년에 5차례 내외의 조사활동을 전개하였다. 북한 적응형 옥수수 종자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전역에서 시험재배를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방문지역도 광범위하게 분포될 수밖에 없다. 주요 방문지역은 평안남도 은산군의 남우시험장, 황해북도 통천시험장, 평양 미림시험장, 통성시험장 등이다.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북한적응형슈퍼옥수수 종자를 개발하기 위해 북한 전역에 총 10개의 시험장을 설치하였는데, 그 위치는 평양시(미림), 평안남도(개천), 평안북도(정주), 황해남도(옹진), 황해북도(신계), 강원도(통천), 함경남도(북청), 함경북도(어랑), 자강도(전천), 양강도(운흥) 등이다. 이 10개 시험장에서는 총 470정보의 면적에 2,500종의 옥수수 종자를 파종하여 100개의 우수종자를 선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남한, 중국에서 1997년에 선발한 240종 중에서 30여 우수종자를 북한시험장에서 선발하였다. 또한 초당·찰옥수수 품종육성 및 시험재배를 실시하여 전체 당 40%, 생체 당 20%를 확인하였다.

국제옥수수재단은 1999년에 북한농업과학연구원과 '북한옥수수마을 결연사업'을 북한의 1,000개 협동농장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이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재배면적은 총 1만ha로 수원19호 재배면적은 2,000ha이고 북한종자인 화성1호의 재배면적은 8,000ha이다. 한 협동농장에서 남한종자와 북한종자를 함께 재배하여, 병충해에 대한 저항성과 수확량을 비교할 수 있게 하였다. 수원19호 생산력 검정시험에 따르면 북한의 우량 품종인 화성1호보다 대가 강하고 내병성이 우수하여 수확량은 평균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19호는 정보 당 7.3~8.3톤을 수확하였고, 직파를 통해 일손이 절약되는 효과를 함께 보았다.

2000년에는 연구용 옥수수 종자 6,000여종 0.9톤을 제공하였고, 2001년에 그 중에서 1천 종을 선발할 계획으로 이 때쯤 되면 종자개발사업의 1차적 성과가 나올 것으로 자체 전망하고 있다. 또한 수원19호도 작년에 90톤을 지원하여 북한 옥수수 생산증산에 기여하고 있다.

나. 남북농업발전협력민간연대

남북농업발전협력민간연대(이하 농발협이라 한다)는 1999년 3월에 씨감자재배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하고 국내 씨감자 재배기술 및 가격, 북한 농업동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리고 8월에는 중국 연변의 씨감자 계약재배 지역을 방문하여 안정적인 종자 확보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1999년 9월에는 북한과 씨감자 협력사업 의향서를 교환하였고, 그 해 11월 29일에는 조선농업과학연구원의 위임을 받은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이하 아태라 한다)와 '씨감자 기술 시험재배 남북협력사업'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합의 내용은 첫째, 사업기간을 2000년 4월(파종)부터 2001년 10월(수확)까지 2년으로 하며, 둘째, 지원규모는 씨감자 다수확 우수품종 150톤과 관련 농자재로 하며, 셋째, 재배지역은 함경북도 온성군의 왕재산 협동농장을 포함한 인근 지역으로 하고, 재배면적은 75정보로 하기로 했다.

남북농발협은 1999년 10월에 씨감자 150톤을 지원하였다. 제공된 씨감자는 13개 품종으로 남작, 수미, 대지, 세풍, 조풍, 남서, 대서 등이다. 제공된 씨감자는 함경북도 온성군, 경성군, 명천군, 회령시 등과 대홍단군에서 재배되고 있다.

2000년 3월에는 복합비료 60톤 이외에 농약, 분무기 등 농자재를 지원하였고, 10월에는 씨감자

400톤을 지원하였다.

남북농발협은 1999년 10월 22일에 씨감자 지원을 위해 함경북도 온성군 왕재산 협동농장을 방문하여 시험재배 사업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2000년 들어서는 씨감자 파종기와 감자 수확기에 방북하여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사업을 협의할 예정이었으나, 6월의 남북정상회담 개최로 인한 정세의 변화로 북한이 방북을 연기하고 있어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1999년부터 긴급 구호 차원의 식량지원과 함께 농업 지원사업을 병행 추진해왔다. 현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추진하고 있는 농업협력사업은 세 가지로 감자증산, 임업협력, 젖염소 시범목장 사업이 있다.

감자증산 지원사업은 북한 8개 군에 각 10만 불씩의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지역은 평양특별시 상원군·중화군·력포지역, 황해북도 사리원시, 황해남도 장연군, 평안남도 개천시·문덕군·봉산군이다. 이 사업은 일회적인 인도적 지원사업에서 지속적인 결연사업으로 옮겨가는 과정의 중간단계 사업으로 추진되었고, 2000년에 1개 군 당 100ha씩 8개 군의 총 800ha 규모의 경작지에 감자증산을 위한 영농자재(씨감자, 농약, 농업용 비닐)를 지원하였다.

임업협력사업은 북한의 자강도 2개 군을 대상으로 춘잠, 추잠 각 100정보씩 총 200정보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을 위해 2000년 4월에 상묘용 비료·농약, 백련설, 누에망 등의 임구가 지원되었고, 6월에 잠종이 지원되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임업협력사업을 추진한 것은 임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국민소득 5천불까지의 주요한 농가 소득원이며, 북한의 식량난 해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은 국민소득규모, 노동력, 입지조건 등에서 세계적인 양잠·최적지역으로 꼽히고 있고, 김정일의 자강도 현지지도 이후 임업에 대해 매우 큰 정책적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 현재 남한은 누에고치, 생사 등을 년 3억불 상당 수입하고 있어, 북한에서 임업이 발전하면 남북한의 산업발전 단계의 차이에 따라 북한은 고치생산 및 제사, 남한은 견직으로 분업화시킬 수 있다.

젖염소 시범목장 사업은 북한의 식량난 장기화에 따른 영양 취약계층인 임산·출산부, 영·유아 등에게 필요한 영양식을 제공하기 위한 인도적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상원군 젖염소 시범목장은 젖염소 500마리를 사육할 수 있는 규모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지원한 물자는 젖염소, 사료, 목초지 조성, 염소젖 칙유·가공처리·포장시설, 염소젖 포장용기, 수송차량 등이다. 먼저 젖염소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총 1,500마리를 지원하는데, 1차분 450마리는 1999년 8월에 지원이 완료되었다. 당초 2000년에 500마리를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남한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젖염소 확보에 어려움이 생겨 작년 12월에 200마리를 보내는데 그쳤다.

앞으로 상원군 젖염소 시범목장은 500마리를 번식 보급용으로 관리하면서 그 외의 지원분과 번식하는 새끼들은 북한 각지의 협동농장에 분배키로 되어 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시범목장 시설이 정기적인 A/S와 소모품 지원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협력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보며, 남쪽의 앞선 축산기술이 소개되고 확인되면서 타 축산분야에 대한 교류를 촉발할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북한으로부터 2001년도 사업으로 농기계 지원을 요청 받고 있다.

북한은 협동농장마다 분무기와 농기계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농장 당 10여대의 트랙터가 있으나 타이어와 기타 부품, 그리고 연료 부족으로 2~3대 정도만을 가동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북한 농업과학원을 사업 파트너로 해서 남한의 다목적 농기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라. 월드비전

월드비전은 한정된 땅을 이용하여 일년 내내 채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해 북한의 식량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하고자 수경재배 사업을 추진하였다. 수경재배사업은 농민, 도시 노동자와 그 가족들(어린이, 노약자)에게 신선한 채소를 공급하여 비타민 섭취를 풍부히 할 수 있도록 하고, 농민들에게는 새로운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수경재배 사업은 작물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을 인위적으로 조절하여 일반 밭농사에 비해 3배 이상의 채소를 생산할 수 있다. 사업의 시행 초기에는 설비비 부담이 많으나 2차년도부터는 비료, 씨앗 등 최소의 비용만으로 지속적인 사업이 가능하다.

1998년 6월 북한과 수경재배 사업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동년 10월 1,000평의 수경재배 온실설치를 위한 물자(20피트 컨테이너 9대 및 파이프, 철골구조물등)가 북한에 지원되었다. 수경재배의 주 수확물은 채소(오이, 토마토)로 1999년 6월에 최초의 수확이 이뤄졌다. 평양시 만경대구역에 있는 1,000평 규모의 이 온실에서는 하루에 1톤 가량의 채소를 생산하여 인근 지역의 탁아소, 병원, 가정 등에 배분하고 있다.

월드비전은 2000년에 수경재배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채소 생산 온실은 평양 만경대구역 외에 평양 두루섬 지역에 1,500평 규모의 온실을 현재 건설 중에 있다. 이 온실은 2001년부터 채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온실의 구조는 4중 비닐의 7m 14연동의 전자동화 온실로 평당 10만원의 건설비가 소요된다.

지금까지 지원된 수경재배 온실 설비는 남한과 호주에서 구입한 것으로, 월드비전의 수경재배 기술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숙식하면서 함께 온실을 설치하였다. 온실 설치 후 기술진들이 방북하여 현장을 확인하며, 과견된 기술자는 북한 농업기술자들에게 수경재배 농업에 대한 기술지도를 위해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월드비전은 작년에 수경재배 온실에서 씨감자 생산을 추진하였다. 씨감자 생산온실은 평양의 농업과학원 내에 있는데, 시설은 1,500평 규모의 씨감자 생산온실 2동, 400평 규모의 육묘장 및 순화온실 1개 동, 5,000평 규모의 씨감자 소괴경 재배망설이 있다. 이 온실은 작년 8월말에 마무리되어 씨감자 재배를 시작하였고, 10월말부터는 지름 5g 이상의 소괴경을 생산하기 시작하여 11월 말까지 1백만개의 소괴경을 생산하였다. 월드비전은 이 온실에서 국내산, 유럽산, 북한산 씨감자를 시험 재배하였고, 첫 생산시험에서 한 포기당 평균 20~30알이 달리는 작황이 나타나 매우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마. 한국 이웃사랑회

한국이웃사랑회는 1997년 1월 뉴욕 UN본부 외교관 구락부에서 UN 북한 대표부 대사와 공식 회

담을 가졌고, 대북 지원사업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다. 북한은 그 해 2월 초 UN 북한 대표부를 통해 접촉창구로 해외동포원호위원회⁹⁾를 지정하고 물자탁송 및 연락방법을 통보함으로써 공식지원의 문이 열렸다.

한국이웃사랑회가 젖소 목장 지원사업을 위해 북한에 지원하는 물자는 젖소, 우유생산 기자재, 사료, 기술지원 물자 등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젖소는 1998년에 200마리를 지원하였고, 금년에 200마리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남한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연기되었다. 그리고 우유생산을 위한 기자재는 우유멸균탱크, 크림분리기, 우유 냉장운반 차량, 우유통을 지원하였다. 사료 지원을 위해서는 콩사료, 목초씨앗, 옥수수 종자, 복합비료를 지원하고 있고, 그 외에 기술지원 물자로 종자 개량을 위한 젖소 정액과 목장운영에 필요한 수의약품 및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북한에는 도단위별로 1-2개소의 국영젖소목장을 보유하고 있다. 국영젖소목장은 보통 500마리의 젖소를 사육할 수 있는 축사와 함께 초지 300평보, 경작지(옥수수 등 사료 공급용) 150평보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수용능력의 거의 절반 수준인 250여 마리의 젖소를 보유하고 있고, 또한 알곡사료를 전혀 공급할 수 없어 우유생산이 전무한 실정이다.

한국이웃사랑회가 1998년에 지원한 젖소 200마리는 모두 새끼를 뱉 암소였다. 그 이유는 북한에서 인공수정을 하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가능한 젖소 증식을 빨리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때 지원한 젖소들이 송아지를 출산하여 1999년에는 젖소 수가 225마리로 증가하였다. 한국이웃사랑회는 젖소 1마리 당 년간 1~1.5톤의 알곡사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생산된 우유는 살균하여 학교 급식에 투입하고 있다. 1999년에는 지원 및 자연증식된 젖소 중 150마리가 우유를 생산하기 시작하였고, 우유 생산규모는 연간 750톤에 달한다. 이는 새끼 급유를 제외하고 암소 1마리 당 1일에 평균 20kg을 년간 250일을 생산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는 15,000명의 어린이들에게 하루에 200ml의 우유를 250일간 제공할 수 있는 양이다.

한국이웃사랑회는 2001년 3월 중에 젖소 200마리를 지원할 계획인데, 이 지원이 이뤄지면 내년에는 대안 및 용강 젖소목장에서 약 500여 마리가 우유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바. 한국제이티에스

한국제이티에스가 대북 농업 지원사업으로 계약재배를 추진하게 된 것은 나진-선봉 어린이 영양식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 필요한 원자재를 북한에서 직접 조달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제이티에스는 영양식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 필요한 원자재인 설탕과 분유는 국내에서 구입하고, 쌀가루, 옥수수 가루는 주로 중국에서 구입하였다. 그러나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북한에서 직접 원자재를 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이에 한국제이티에스는 북한의 협동농장과의 계약을 통해 한국제이티에스가 영농자재를 공급하고, 북한의 협동농장은 수확량의 일정 부분을 어린이 영양식 공장의 가동을 위한 원자재로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한국제이티에스가 북한의 협동농장과 맺은 계약은 두 가지 형태이다.

9) 북한은 남한 민간단체의 접촉 창구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를 내세우고 있는데, 남한 민간단체들이 해외 지부를 통해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여러 창구를 내세우고 있다. 해외동포원호위원회는 북한이 해외동포 사업을 하는 기관으로 지금까지 해외동포들의 북한 방문 및 재북가족 상봉 등의 사업을 담당하여 왔다.

첫째는 한국제이티에스가 비료, 농약, 종자 등을 지원하고 기존의 북한식 농법인 영양단지 방식¹⁰⁾으로 재배를 하는 것이다. 둘째는 한국제이티에스가 비료, 농약, 종자 외에 농업용 비닐을 지원하여 피복재배 및 직파방식¹¹⁾으로 재배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제이티에스는 농업기술자를 보내 기술지도를 하기로 북측과 합의하였다. 이익배분은 두 가지 모두 종전 생산량 및 영농물자 원가를 공제한 순 이익 중 일부를 한국제이티에스에게 제공하기로 하였다.

한국제이티에스는 1998년에 시범적으로 함경북도 온성지역의 60정보에 새로운 영농법으로 대북 농업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 한국제이티에스는 재배작물을 옥수수와 벼 두 가지로 정하였는데, 옥수수의 경우에는 미지원한 곳과 지원한 곳을 구분하고, 지원한 곳도 북한 농법을 실시한 곳과 중국 농법을 실시한 곳으로 구별하여 작황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벼농사의 경우에는 북한 농법을 적용하는 미지원한 곳과 중국 농법¹²⁾을 적용하여 지원한 곳 두 군데를 각각 조사하였다. 그 결과 비료와 농업기술을 지원하여 옥수수와 쌀을 재배한 곳과 지원 받지 못한 곳과의 생산량이 3~5배 정도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에 1999년에는 온성군 외에 나진, 선봉 등 3개 지역을 추가하여 4곳의 협동농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1999년의 지원대상 총면적은 1,000정보이며, 경작작물은 옥수수와 벼농사였다. 2000년에는 대상 협동농장이 24개로 총 1,850정보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였다.

한국제이티에스가 파견한 중국의 농업기술자들은 2000년에 10회에 걸쳐 방북하면서 기술지도를 실시하였고, 병충해 발생 시 이에 대한 적절한 기술지도를 시행하였다. 현재 뉴욕 제이티에스 나진·선봉상주대표사무소를 설치하고, 이 사무소에 4명의 중국 국적 조선족이 상주하여 한국제이티에스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3) 보건의료 지원 분야

대북 보건의료 지원은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보건기구(WHO) 등 유엔기구가 큰 역할을 담당하였고, 국내는 지원단체의 수도 적고 지원규모도 매우 적은 편이다. 그 이유로는 첫째, 짚는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주는 것이 1차적이어서 의약품 지원은 우선 순위에서 밀려 있었고, 둘째, 이 분야의 특성상 보건 의료에 대한 전문성을 갖지 않으면 지원사업을 전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보건의료 상황은 식량난만큼이나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현재 북한은 약품 및 의료 기자재의 부족으로 보건 의료 시스템이 붕괴된 상태이며, 북한 주민들은 저개발국에 창궐하는 여러 질병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앞으로 북한의 식량난이 점차 완화될수록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관심은 높아 질 수밖에 없을 것이며, 보건의료 지원분야는 농업 지원분야와 함께 대북 인도적 지원의 양대 중심축으로 될 것이다.

그 동안 전문적으로 보건의료 지원활동을 전개해 온 단체로는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유진벨프로젝트, 한민족복지재단 정도가 있다. 2000년 들어서는 의사, 약사, 병원, 제약 부문의 보건의료 6개

10) 이 방식은 북한의 주체농법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영양단지에서 모를 키운 후 밭에 옮겨 심는 방식을 말한다.

11) 밭에 비닐박막을 덮어 잡초 생장 억제와 지력보호를 꾀하면서 직접 종자를 밭에 심는 방식임.

12) 북한 농법은 평방미터 당 벼를 180~200포기를 심는데 비해, 중국 농법은 평방미터 당 40포기를 심기 때문에 종자가 절약되고 노동력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보내기도 일찍 끝낼 수 있다.

단체들이 참여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보건의료협력본부가 구성되어 북한 어린이 의약품 보내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는 1997년 6월 의사, 약사, 한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전문인들이 함께 모여 결성한 단체로 북한 어린이에게 긴급히 필요한 의약품을 지원하는 활동을 통해 지금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의약품을 지원했다. 대북 지원 초기에는 보건의료 분야의 대표적인 단체로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00년 들어 대북 보건의료 지원을 위한 모금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이 더 이상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이 단체가 지원한 주요 의약품은 비타민제(간유구 30만 카드뮴, 엽산 10만정, 철분제 15만정, 비타민 B 복합제 770만정, 비타민 B 복합제 주사액 10만 앤플), 항생제(아목시실린 150만 카드뮴, 에리스로마이신 40만 카드뮴, 젠타마이신 주사액 20만 앤플), 진통제 및 항염제(아세트아미노펜 120만정, 이브부로펜 200병), 치과용 마취제(리도케인 6만 앤플) 등이다.

유진벨프로젝트는 북한의 가장 심각한 전염병인 결핵 치료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1997년 1월에 평양적십자병원에 앰뷸런스를 기증한 이후 9월에 북한의 보건성으로부터 결핵퇴치를 위한 지원을 요청 받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북한에는 시·도 단위의 13개 결핵병원과 63개소의 결핵요양소가 있는데, 그 규모에 따라 50~250명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다. 유진벨프로젝트는 결핵병원에 이동 X-Ray 검진차, 앰뷸런스, 결핵약을 지원하며, 30여개의 결핵요양소에는 동절기 채소 재배를 위한 온실 자재를 공급하였다. 특히 온실자재 공급사업은 결핵요양소마다 소농장 운영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매우 창의적인 사업이다. 또한 유진벨프로젝트는 국내 민간단체 중 북한에서 가장 넓은 활동 반경을 갖고 있는데, 접근이 쉽지 않은 함경남북도 지역에까지 들어가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민족복지재단은 평양 제3병원에 미국의 기독의료인 단체를 통해 의료장비와 의약품을 지원해온 '사랑의의약품나누기운동'과 '한민족통일준비모임'이 통합하여 1996년 11월 창립되었다. 한민족복지재단의 사업은 로뎀제약회사 설립 지원, 선봉병원 현대화 지원, 평양 의료지원 사업이 있다.

라진로뎀제약회사 설립 지원사업은 1998년에 조선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합의하여 추진되었고, 1998년에 라진선봉시 신흥동 현지에서 착공식을 가졌다. 1999년 9월에 1단계 토목공정이 완료되었고, 2000년 5월에 2단계 철골 및 패널공정이 완료되어 있다. 선봉병원 현대화 지원사업은 1998년 1월 북한과 의향서를 체결하였고, 동년 8월부터 치과, 방사선과, 수술실, 검사실의 현대화를 지원하였다. 평양 의료지원 사업은 2000년 3월에 평양제1병원 구내에 어린이전문병원을 설립키로 합의하였고, 현재까지 인큐베이터, 소아과 의료장비, 의약품, 앰뷸런스 등을 지원하였다.

4. 맷음말 : 대북 지원사업의 발전을 위한 과제

민간단체들이 지난 5년여간 진행해 온 대북 인도지원 사업은 다양한 소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민족화해와 남북교류를 증대시켰다는 점, 이러한 민간단체의 프로젝트들은 정부와 기업의 대규모 진출을 준비하는 시범적 사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북한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남한 및 국제사회의 지원은 북한 스스로의 경제개혁과 정책 전환을 측면 지원하는 의미가 있으며, 인도지원 창구는 1995년 이후 북한과 외부세계를 연결시키는 관문 역할을 해왔다는 점이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정부와 기업이 북한과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전진시키고 있지만, 이들 사업은 정치 군사적 상황에 매우 민감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

사업은 이와 반대로 남북관계의 긴장과 대립을 완화시키는 안전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향후 대북 인도지원 사업의 발전을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북 지원사업의 수혜기관과 수혜자를 구체화시키고, 그들과의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지금까지 지원사업의 북측 대상기관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농업성, 민족화해협의회 등의 중앙기관이거나 정치적 기관이었고, 이들은 현장에서의 구체적 요구보다는 정치적 판단을 우선하기 때문에 지원효과를 높이는데 장애가 되는 점이 적지 않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업 및 보건의료 분야의 지원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혜기관을 얼마나 세부화 시켜 타겟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들과 얼마나 공동 협력이 가능한가에 달려있다.

둘째, 교육, 환경, 여성 등 지원활동이 매우 취약한 분야에 대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대한 남한 사회의 관심은 식량난에 초점이 맞혀져 왔고, 최근 지원단체의 사업도 농업 복구 및 보건의료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의 위기는 사회 전반의 모든 영역에 걸쳐져 있다. 남한 사회에서 별다른 관심을 받지는 못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교육, 환경, 여성 등의 분야에 대한 지원사업은 매우 중요하며 지금부터라도 입안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고, 이에 따른 체계적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1회적인 물자지원 보다는 농업생산력 회복, 보건의료 환경의 개선등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 및 보건의료 분야에서 사업목표의 설정, 사업의 우선순위, 역할분담, 사업방식 등에 대한 결정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 금년 2월 중에 발족할 예정인 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는 이러한 마스터 플랜을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대북 지원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에 대한 지원활동은 국제사회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장기적 지원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북 지원에 대한 관심이 저하되고, 지원재원 모금에 어려움을 겪는 등 장기적 지원에 따른 피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00년 유엔 Appeal에 대한 호응도가 당초의 목표액인 3억 1,375만불을 기준으로 할 때 34.5%, 수정된 목표액을 기준으로 하면 54.8%의 충족률을 보인 것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¹³⁾ 유엔은 2001년 대북 지원 Appeal을 사상 최대인 총 3억 8,633만불로 정하고 국제 사회의 참여를 요청하였다. 이러한 목표들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모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13) 통일부 인도지원국, "2000년 국내외 대북지원 동향 및 평가보고", 2001.

<참고문헌>

- 김순권, "남북한 옥수수재배기술 협력사업 추진현황", 남북농업협력추진협의회 제3차 회의 발표자료, 2000.
- 김영훈, 김운근, 한수용, "남북농업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농림부 용역 연구과제, 1999.
- 김영훈, 이종무, "민간단체의 대북 농업지원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농림부 용역 연구과제, 2000.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창립 4주년 자료집, 2000.
- 이금순, 이종무, 최철영, "對北人道的支援運動의 變遷過程과 現況에 關한 研究", 통일부 용역 연구과제, 1999.
- 이종무, "대북 인도지원운동의 현황과 과제", 남북농업협력추진협의회 제3차 회의 발표자료, 1999.
- , "민간단체의 대북 농업협력 현황과 향후 과제", 농업·환경·생명을 위한 WTO 부산연대 제2회 정책세미나 발표자료, 2000.
- ,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대북지원 현황과 과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회보, 2000.
- , "대북 인도적 지원의 현황과 과제", 대북 인도지원 동경 국제NGO대회 발표자료, 2000.
- 통일부, 국정감사자료집, 2000.
- 한국월드비전, "월드비전의 북한사업 현황", 1999.
- , "씨감자 생산 지원사업" 보고서, 2000.
- 법률, "북한의 식량난 해결을 위한 농업지원 : 한국제이티에스의 합영농장 사례 중심", 1999.
- FAO/WFP, "Special Report : FAO/WFP Crop and Food Supply Assessment Mission to the D.P.R of Korea". 2000.
- UNOCHA, "DPR Korea : Humanitarian Situation, Information Bulletin # 6~8, 2000.
- , "2001 Consolidated Inter-Agency Appeal For DPR Korea", 2000.

이제 이웃을 살피고 살피는 삶과 함께하는 <이웃문화>

찾아온 그늘 아래에서 살펴야 합니다. 2001년 2월

한국이웃사랑회 소개

1. 설립취지 및 개관

한국이웃사랑회는 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전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에 부응코자 1991년 3월 한국인에 의해 설립된 UN공인 민간국제기구이다.

국내에서는 전문사회복지기관으로서 전국 20개 지부에서 아동복지사업(사회복지시설 아동지원사업, 도시영세지역 어린이집 운영, 벽지분교 아동지원사업, 아동상담 및 아동학대상담센터 운영, 결식아동 지원사업), 장애인 복지사업(재가장애인 지원사업, 장기질환자 가정 지원사업), 가족복지사업(도시영세지역 복지관 운영), 농촌지역개발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방글라데시(고아원후원사업, 초등학교 운영, 청소년 Hostel 사업), 르완다(빈민아동보호사업, 난민구호개발사업), 케냐(초등학교 운영 및 빈민아동보호사업), 에티오피아(빈민아동보호사업), 멕시코(난민보건사업), 몽골(지역개발사업), 타지키스탄(지역개발사업) 등에 국제NGO로 등록을 하고 한국인 직원을 파견하여 구호 및 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1996년에는 한국최초로 UNECOSOC (유엔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 NGO의 최상위 지위인 포괄적 협의지위(General Consultative Status)를 부여받았다.

특별히, 1995년 이후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식량부족으로 인한 기근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그 해 7월부터 대북지원사업을 시작하여 1995년 긴급구호사업(작업복, 운동화, 양말, 장갑), 신의주 초등학생 빵급식사업 (1995년 8월 - 1996년 8월, 총 80여만개), 의류지원 및 1997년 식량, 비료, 의약품 지원사업에 이어 1998년도에 젖소 200마리를 지원하고 3개의 목장을 운영하며 낙농개발 및 어린이 우유급식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정부로부터 독자창구로 지정받아 북한에 직접 지원하고 있다. 2001년도에는 낙농개발 및 우유급식사업 외에 병원건립사업, 고아원 지원사업 등을 계획 중이다.

2. 연혁

- 1991. 3. 한국이웃사랑회 창립총회(회원 128명)
- 1991. 6. 사단법인 허가 취득(보사 제783호)
- 1991. 12. 방글라데시 구호·개발사업 지원개시
- 1992. 5. 경기도 성남시 성남동 제1, 제2복지회관 개관
- 1993. 6. 전국민 사랑의 굽기운동 개시(연례행사)

- 1993. 10. 소말리아 난민구호활동 전개
- 1993. 11. 경남 김해시 구산사회복지관 개관
- 1994. 2. 충남아산시 온주종합사회복지관 개관
- 1994. 8-11. 국내 최초로 자이레 고마지역에 르완다 난민 긴급구호, 의료봉사단 1차팀 8명 파견 (8차 총 92명)
- 1994. 8. 자이레 고마UNHCR(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에 NGO(비정부기구) 등록
- 1995. 3. 부산지부 등 8개 지부 개설
- 1995. 3. 한국국제협력단(KOICA) NGO등록
- 1995. 3. 르완다 난민촌 상설사무소 개설
- 1995. 5. 미국이웃사랑회 현지 법인 등록
- 1995. 8. 북한 신의주 어린이 급식사업(중국단동지부)개시
- 1995. 12. 이웃사랑회 케냐지부 현지법인(NGO)등록
- 1996. 3. 이웃사랑회 국제본부 설립
- 1996. 3. 사회복지법인으로 법인격 변경(제813호)
- 1996. 7. 이웃사랑회 방글라데시지부 현지법인 등록
- 1996. 8. UN ECOSOC(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서 포괄적 협의지위획득
- 1997. 5. 북한동포지원을 위한 이웃사랑회 대표단 1차 방북(연례 방문)
- 1997. 6. 제1회 세계아동평화상 개최(연례행사)
- 1997. 7. 이웃사랑회 에티오피아지부 현지법인 등록
- 1998. 9~11. 대북 낙농개발사업 및 어린이 우유급식을 위한 젖소 200마리 지원
- 1999. 2. 통일부로부터 대북지원 독자창구 지정
- 1999. 8~9. 터키 지진참사현장 긴급의료봉사단 2진 13명 파견
- 1999. 11. 네팔 및 몽골사업 실시
- 2000. 2. 일본이웃사랑회 설립
- 2000. 7. 르완다 정부에 현지법인 등록
- 2000. 10. 보건복지부로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정
(경기, 대전, 충북, 전북, 천안 아동학대예방센터)
- 2001. 2. 인도 지진참사현장 긴급의료봉사단 1진 6명 파견

3. 2001년도 사업계획

(1) 국내복지사업

사업종류	사업명	사업 대상	사업 내용
아동복지사업	38개 사회복지시설 지원	2,220명 시설아동	정서교육, 보건위생, 자립지원, 재활교육
	5개 아동학대예방센타 운영	1,050명 피학대아동 및 학대부모	아동 및 부모상담, 생계비 및 가정봉사활동 지원, 부모교육, 교사교육, 조사연구 및 홍보, 자원상담원 및 자원봉사활동 관리, '어린이 지킴이'운영
	1개 아동일시보호시설 (쉼터) 운영	137명 피학대아동	상담치료, 생활교육, 학습 및 여가활동 지도
	결식아동지원사업	5,000명 결식아동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아동학대문제연구소		아동학대 개입 및 치료 매뉴얼 개발, CES 프로그램 보급, 아동학대 관련 전용 홈페이지 운영

사업종류	사업명	사업 대상	사업 내용
종합복지사업	3개 사회복지관 운영 (성남, 아산, 김해)	566세대 저소득가정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한 가정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청소년 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재가장애인복지사업, 보육정보센터, 봉사센터
	4개 어린이집 운영 (성남, 아산, 김해)	269명 미취학아동	영세민, 저소득 지역의 자녀들에게 교육 및 보육서비스 제공
재가복지사업	20개 지역복지센터 운영	200,000명 지역주민 1,000명 기자단 2,000명 자원봉사동아리 18,100명 신규회원	기자단 구성 및 활동, 지역복지센터 회원확보, 동아리 조직 및 운영, 동아리 자원봉사활동
	지역 재가복지사업장	200세대 재가장애인 및 재가 독거노인	영세재가장애인 및 노인가정 생계비 지원 및 가정봉사 서비스
재가복지사업	삼성SDI 시각장애인 지원	120세대 저소득 시각장애인	삼성 SDI 직원들의 시각장애인 가정에 대한 생계비 지원, 정서적 지원, 가정봉사 서비스
	구촌사업장	338세대 폐결핵환자가정	장학금지원, 생계비 지원, 반찬 및 간식 급식, 의약품 및 진료 지원
	지역복지연구소		웹사이트 구축, 기자단 매뉴얼 작성, 교육 및 훈련, 지침서 및 사례집 발간

농촌개발사업	1개 평창지역개발사업장	180명 농촌분교아동 83세대 농촌가정	우유급식, 불우노인 지원, 영농자금 대출
긴급구호사업	1개 긴급구호사업장	6회 예정	긴급구호비 및 물품 지원
기타사업	자원봉사센터	400명 해외자원봉사신청자	중장기 및 단기 해외자원봉사자 모집 및 파견, 해외자원봉사 관리프로그램 개발 및 홈페이지 관리·운영, 조사연구
	연수 및 인력개발사업장	150명 피교육자	훈련 및 교육지원, 사업평가 및 조정
	사회개발연구소		회원개발 및 홍보사업 지원

(2) 해외사업

국가명	사업장명	사업 내용
방글라데시	텔레구 보육원	천대받는 텔레구족 아동(50명) 후원 및 교육지원
	밧다라 빈민아동 초등학교	도시빈민아동(400명) 학교교육 및 성인 문맹교육
	가타일 빈민아동 초등학교	농촌빈민아동(410명) 학교교육, 도서관 운영
	밀빨 및 굴산 모자보호센터	도시빈민아동(250명) 보육 및 노숙아동(50명) 지원, 도시빈민여성 상담, 성인 문맹교육
	시라지간지 농업개발사업장	빈농 후계자(100명) 훈련 및 농가자립사업
케냐	장학사업장	빈민 우수학생(85명) 장학금 지원
	사랑의 집 빈민학사	빈민 청소년(30명)을 위한 학사 제공
	지라니 교육센터	도시빈민아동(150명) 기초교육, 기술교육, 급식, 진학지원
	고로고쵸	빈민지역 환자(1000명) 및 영양결핍아동(80명)을 위한 보건사업
	지역보건사업장	멜캄어린이집
에티오피아	웨레다22 가정개발사업장	도시빈민아동(333명)을 위한 교육, 보건, 급식, 부모교육
	웨레다22 환경개선사업장	도시빈민가정(160세대, 800명)을 위한 화장실 건축
	웨레다12 식수개발사업장	도시빈민가정(1,250세대)을 위한 위생, 보건개선사업 - 공동수도, 지하수개발사업
	웨레다12 환경개선사업장	도시빈민가정(200세대, 1,000명)을 위한 공중화장실 설치 및 보건사업
	가추리로 탁아센터	도시빈민아동(100명) 보호, 보육 및 기초교육
르완다	레메라 루꼬마병원 사업	기타라마 17만명 주민을 위한 전문의료병원 운영사업, 한국인 의료진 파견 및 의약품·의료기기 지원

국가명	사업장명	사업 내용
타지키 스탄	다브로사셋스트바 보육원	전쟁고아(30명) 양육을 위한 급식, 교육, 의료지원
	레닌스키농장 보육원	취학전 아동 양육을 위한 급식, 생활지원, 교육, 의료지원
몽골	녹색농업기술센터	농업전문가(22명) 훈련 및 양성, 식생활 개선운동
네팔	얄라보건식수사업	도시빈민(280명) 식수공급, 우물개량, 주민교육
필리핀	빈민선교 및 조사사업	미전도종족, 선교, 교육 및 의료보건 사업 조사
기타 사업	UN Liaison Office 지원	뉴욕 및 브뤼셀 UN Liaison 사업 지원
	국제연구개발사업	국제NGO사업연구, 제3세계 빈곤욕구조사, 신규사업 조사

(3) 북한사업

사업명	사업 대상	사업 내용
낙농개발 및 우유급식사업	유·초등학교 어린이 30,000여명	젖소지원, 우유생산기자재 지원, 사료 및 비료지원, 농약 및 분무기 지원, 수의약품 및 기술 지원 등을 통한 어린이 우유급식
의료지원사업	의료지원이 필요한 주민	의약품 및 의료기자재 지원
긴급구호사업	일반 주민 및 어린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을 위한 식량·의류 등 긴급구호품 지원

4. 2001년도 예산 : 총 10,162,290,000원

그림이 뜨지 않아 편집관계상 삭제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5. 한국이웃사랑회 네트워크

(1) 국내 네트워크

· 한국이웃사랑회
<http://www.gni.or.kr> e·mail:gni@gni.or.kr

☎ +82-2-704-9923 Phone Fax +82-2-704-9925

서울시 마포우체국 사서함 7호, 121-600

· 서울동부지부 / 서울송파지역복지센터

e·mail:gnieast@hitel.net ☎ 02-400-3113 Fax. 02-400-8263
송파구 가락동 181-13 2층

· 서울서부지부 / 서울마포지역복지센터

e·mail:gnwest@hitel.net ☎ 02-704-3808 Fax. 02-704-9925
마포구 마포동 33-1 대농빌딩 8층

· 서울남부지부 / 서울영등포지역복지센터

e·mail:gnisouth@hitel.net ☎ 02-679-6895 Fax. 02-679-6894
영등포구 양평로1가 89-2 대광빌딩 2층

· 서울북부지부/ 서울성북지역복지센터

e·mail:gninorth@hitel.net ☎ 02-923-5440 Fax. 02-923-5441
성북구 동소문동6가 17번지 봉현빌딩 6층

· 부산지부 / 부산진구지역복지센터

e·mail:gnips@hitel.net ☎ 051-636-5767 Fax. 051-636-5768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4동 1155-2 CBS빌딩 4층

· 대구지부 / 대구북구지역복지센터

e·mail:gnik@hitel.net ☎ 053-427-5147 Fax. 053-426-8890
대구시 북구 침산동 3-7 기독교대구방송국 203호

· 인천지부 / 인천부평지역복지센터

e·mail:gniic@hitel.net ☎ 032-764-2045 Fax. 032-765-2545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09-34 2층

· 광주지부 / 광주북구지역복지센터

e·mail:gnikj@hitel.net ☎ 062-262-9506 Fax. 062-262-9652
광주시 북구 문흥동 1000-4 대림빌딩 4층

· 대전지부 / 대전서구지역복지센터 / 대전아동학대예방센터

e·mail:gnita@hitel.net ☎ 042-522-9987 Fax. 042-525-9860
대전시 서구 탄방동 78-24 4층

· 강원지부 / 원주지역복지센터

e·mail:gnikw@hitel.net ☎ 033-746-1160 Fax. 033-746-1160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916-6

· 전북지부 / 전주지역복지센터 / 전북아동학대예방센터

e·mail:gnjp@hitel.net ☎ 063-282-9161 Fax. 063-285-9161
전북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3가 53-1 다산빌딩 2층

· 충북지부 / 청주지역복지센터 / 충북아동학대예방센터

e-mail:gnicu@hitel.net ☎ 043-257-7368 Fax. 0431-257-6386

충북 청주시 상당구 탑동 215-6

· 경기1지부 / 수원지역복지센터 / 수원아동학대예방센터

e-mail:gnisw@hitel.net ☎ 031-245-2448 Fax. 031-245-2449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34번지 한동빌딩 2층 201-1

· 경기2지부 / 성남지역복지센터 / 성남복지관

e-mail:gnsn@hitel.net ☎ 031-758-1385 Fax. 031-721-3881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83-3 성남동 복지회관

· 충남1지부 / 천안지역복지센터 / 천안아동학대예방센터

e-mail:gnica@hitel.net ☎ 041-578-2655 Fax. 041-578-2656

충남 천안시 봉명동 245번지 2층

· 충남2지부 / 아산지역복지센터 / 온주종합사회복지관

e-mail:gnicn@hitel.net ☎ 041-544-7411 Fax. 0418-544-7411

충남 아산시 읍내동 206 온주종합사회복지관

· 경남지부 / 김해지역복지센터 / 구산사회복지관

e-mail:gnikn@hitel.net ☎ 055-337-4541 Fax. 0525-37-4543

경남 김해시 구산동 321 구산사회복지관

· 경북지부 / 포항지역복지센터

e-mail:gnikp@hitel.net ☎ 054-284-1020 Fax. 054-284-1027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2동 703-25

· 울산지부 / 울산남구지역복지센터

e-mail:gnil@hitel.net ☎ 052-260-5677 Fax. 052-260-5677

울산시 남구 달동 570-2호 2층

· 전남지부 / 목포지역복지센터

e-mail:gnjn@hitel.net ☎ 061-284-2220 Fax. 061-284-222

전남 목포시 상동 941-8 2층 1

(2) 국제 네트워크

· 이웃사랑회 국제본부(Good Neighbors International)

<http://www.goodneighbors.org> e-mail:mail@goodneighbors.org 0011-845-080 ☎ 101-101@korea.com

서울특별시 마포우체국 사서함 7호 121-600

☎ +82-2-706-8344 Fax +82-2-717-2496

· UN 연락사무소

180 West End Ave. Apt. 10-D New York, NY 10023, USA

☎ +82-2-704-9923 FAX +82-2-704-9923

☎ +1-212-595-2298 Fax +1-212-787-1852

· 미국이웃사랑회 (Good Neighbors USA)

e-mail:gniusa@aol.com

1717 Swede Read #204 Blue Bell, PA 19422, USA

☎ +1-610-239-7690~1 Fax +1-610-239-7693

· 일본이웃사랑회(Good Neighbors Japan)

e-mail:gnjapan@tky3.3web.ne.jp

1-9-11 Susukino Aob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225-0021

☎ +81-45-902-7898 Phone/Fax

· 방글라데시 이웃사랑회 (Good Neighbors Inc. in Bangladesh)

e-mail:gnibprem@citechco.net

PO Box 11085, Uttarah Dhaka-1230, Bangladesh

☎ +880-2-892-0419

· 케냐이웃사랑회 (Good Neighbors Kenya)

e-mail:gnkenya@swiftkenya.com

PO Box 76327 Nairobi, Kenya

☎ 254-2-711712 Phone/Fax ☎ +254-2-716167

· 에티오피아 이웃사랑회 (Good Neighbors Ethiopia)

e-mail:gne@telecom.net

PO Box 12937 Addis Ababa, Ethiopia

☎ 251-1-622536 Phone/Fax

· 르완다 이웃사랑회 (Good Neighbor Rwanda)

e-mail:gnrwanda@rwandatel1.rwanda1.com

B.P.47 Gitarama, Rwanda

☎ 250-62201 Phone/Fax ☎ 250-0853-0534 Phone/Fax

· 타지키스탄 이웃사랑회 (Good Neighbors Tajikistan)

e-mail:gnt@tajik.net

Tajikistan 734025 Dushanbe, Mainpost 212, Tajikistan

☎ +992-372-33-0668 Fax +992-372-51-0102

· 몽골 사업장 (Green Agro-Technology Center)

e-mail:gatc-co@hanmail ☎ 976-1-450191

C.P.O. Box 859 Ulaanbaatar 13, Mongolia

국제 평화·인권·난민지원센터

(사) 좋은벗들

1996년 12월, 북한동포돕기를 범불교적으로 추진하고자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를 창립하고 불교의 동체대비 사상을 바탕으로 짚주리는 북한동포의 고통을 해결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1999년 5월, 통일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아 '좋은벗들'로 명칭을 바꾸고 민족의 화해와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선결과제인 북한식량난과 식량난민 문제 해결을 출발점으로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제3세계의 난민구호사업과 인류가 안고 있는 분쟁과 갈등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평화운동, 그리고 인간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현장을 찾아 인권운동을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I. 설립취지문 (1999년 3월)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는 그동안 온 국민의 전폭적인 후원에 힘입어 민족화해를 위한 북한동포돕기 백만인 서명운동과 식량지원을 위한 모금 활동, 그리고 사랑의 옷보내기 운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또한 심각한 북한의 식량사정을 국내외에 알리어 인도적 차원에서의 대북 식량지원과 경제제재 해제를 호소한 결과 국내는 물론 미국,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 적극적인 호응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의 그 동안의 활동 성과를 토대로, 인도적인 지원활동에서 한발 나아가 민족의 화해와 공존, 동아시아의 평화를 준비해나가는 보다 진전된 공동체 운동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를 발전적으로 계승하면서 새로이 사단법인 '좋은벗들'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과제는 민족의 통일입니다. 통일이 안 되고서는 민족의 번영과 국가발전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역량을 통일운동에 모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통일이 아무리 시급하다 하더라도 어느 일방에 의한 흡수통일이나 무력통일은 반대합니다. 그럴 경우 통일과정에서의 엄청난 혼란과 희생, 통일 후의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중의 생존과 인권이 보장되면서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일방의 주장이나 어느 한쪽의 희생에서 이루어지는 통일이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국민들의 의견이 수렴되면서 이루어지는 통일이어야 합니다.

지난 50년간 남북 민족 사이에 가로놓인 불신과 반목의 벽을 넘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부단한 교류와 협력을 통한 민족의 화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또한 짚주림과 질병으로 극한 상황에 처한 북한 난민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들을 돕지 않으면 그들은 당장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단법인 '좋은벗들'을 통하여 이러한 일들을 하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우리민족에게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평화적인 민족통일을 이루어 반만년 이어온 민족의 정기를 드높이고 나아가 인류의 공영 발전에 기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민족사적인 과제에 우리는 조그만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목적과 취지에 동감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II. 활동 방향

(사) 좋은벗들은 짚주리는 민족의 아픔으로 인하여 태어났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의 벗이 되고자 합니다.

민간통일운동의 방향제시와 평화·인권·난민지원 활동을 통해 서로를 살리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1. 평화운동

'좋은벗들'은 한반도의 평화를 통한 한민족의 통일을 만들어갑니다. 우선 식량난을 맞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은 민족화해의 계기가 되고 한반도 평화구축의 밑거름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통일은 구조적인 평화의 투명성이 보장 될 때 가능합니다. 군비 축소와 평화체제를 이루기 위한 평화협정 체결과 남북기본합의서가 이행되지 않는 이유는 다름 아닌 서로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좋은벗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에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통해 냉전체제하 분단 50여년간의 불신과 반목을 화해시키는 작업부터 먼저 하려 합니다.

2. 인권운동

민족의 아픔을 통해 외면할 수 없는 인류의 고통에 새로이 눈뜨게 됩니다. 서로가 다르다는 차이가 차별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좋은벗들'은 차이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추구합니다. 그 누구도 인종, 민족, 성, 종교, 계급(신분)간의 차이로 차별 받아서는 안됩니다. 장기수 석방, 사형제도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등 국내의 인권문제 뿐만 아니라 동남아, 제3세계에서의 민주화운동, 인권운동에 대한 지원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3. 난민지원

우리는 식량난을 맞아 중국으로 넘어오는 북한동포를 '식량난민'이라 규정하고 북한, 중국 접경지역에서 이들에 대한 직접 구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식량난민뿐만 아니라, 전세계에는 2,400만이 넘는 난민과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유민이 10억명을 넘고 있습니다. 현재 소말리아, 쿠르드, 유고 등 분쟁 중인 나라만도 60여개국에 이르고 있습니다. '좋은벗들'은 난

민을 만들어내는 분쟁의 방지 및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한 방지되고 있는 난민들의 인권과 생명을 지키고자 합니다.

III. 주요 활동 내용

1. 북한식량지원

좋은벗들은 1997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북한동포 식량지원을 해왔다. 대한적십자사를 통하여나 국제구호단체를 통해서 북한동포식량지원을 해왔고 라진·선봉시 탁아소와 유치원 결연사업 등을 통해서 가능한 빠르게 북녘동포들을 지원해왔다.

가.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지원

초기 대북식량지원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하여 북한에 전달해야만 했기 때문에 1997년 1월부터 5,000만원의 성금과 140톤의 강원도 감자, 중국산 옥수수 1천톤, 라진·선봉 지역에 지정 기탁한 수수 1천톤, 비료보내기 1,000만원 성금 등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하였다. 이 때 천주교·기독교·원

불교 등의 종교단체 및 시민단체들과 함께 성금을 전달하였다.

나. 국제 민간구호단체를 통한 지원

(1) 유진밸 재단을 통한 옥수수 지원
국제 민간구호단체인 유진밸 재단(이사장 스티브 런튼)을 통하여 중국산 옥수수를 지원하였고, 98년 7월 4일 결핵환자 100명이 완치할 수 있는 지원금도 보냈다.

(2) 제이티에스를 통하여 라진·선봉 지역 탁아소 유치원 어린이 영양공급

국제기아·질병·문맹퇴치 민간기구인 제이티에스(JTS)를 통하여 라진·선봉 지역의 116개 탁아소·유치원 어린이 11,000여 명에게 어린이 영양식품을 지원했다. 1997년 11월 라진·선봉시 행정경제위원회와 1년간 어린이 특수 영양식품을 무상지원하기로 합의했었지만, 초기에는 전기 공급이 제대로 안되어 영양식품 원재료인 입쌀·옥수수·콩·분유·설탕 등을 배분하다가 1998년 4월 이후 매달 1회~2회 정기적으로 어린이 1인당 3kg씩을 지급했다. 지금은 한국 제이티에스가 중국의 도문 ↔ 남양 해관을 통해 입쌀·옥수쌀 등을 공급하고 부산 ↔ 라진 항을 통해 1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설탕과 분유를 공급하고 있다.

다. 북한내 긴급식량지원

북한 내 식량이 매우 부족하여 아사 위기에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확인이 되면 조선족을 통하여 한 지역에 10톤에서 30톤 정도의 식량을 트럭에싣고 긴급하게 지원했다.

2. 중국에 거주하는 북한난민 지원

1997년 5월부터 현재까지 식량을 찾아 압록강과 두만강을 통해 국경선을 넘어오는 북한난민의 구호를 위해 식량 지원 및 의류지원 등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으며, 초기의 단순식량 및 의류 지원에서 지금은 각 북한난민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지원 등을 해 오고 있다.

① 중국내 꽃제비 어린이 보호와 교육

② 중국내 장기체류 북한난민의 보호·정착·생활을 위한 거주 지원

③ 중국내 북한난민의 건강을 위한 의료지원

④ 북한난민 직접지원프로젝트

⑤ 국경변에서의 생명의 보파리 사업 : 식량·옷·의약품 직접지원

지금까지 약 1만 5천명에 이르는 북한난민을 직접 만나 지원하는 사업을 하여 왔다.

3. 조사보고활동

북한에서 월경하여 중국으로 넘어와 있는 북한 난민들을 조·중 국경지역, 압록강·두만강변의 중국 길림성 장백·연변지역 등에서 1997. 9. 30부터 만나면서 인터뷰하였다. 조사 요원들은 북한식량난민이 피신해 있는 곳을 찾아가서 개별적으로 인터뷰하거나 안전한 장소로 초청하여 함께 며칠 밤을 지내며 북한난민들을 인터뷰하였다. 조사를 하는 목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식량난과 식량난민들의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국내외에 정확히 알림으로써 이들에 대한 좀더 실질적인 식량지원을 하기 위함이다. 또한 앞으로 남과 북이 화해하고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길에서 북한주민의 의식 파악과 생활실태 파악은 서로를 아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가. 북한식량난민 1,855명에 대한 면담 조사 결과 보고서 '북한식량난의 실태' (1998.12)

1995년 8월 이후 3년 동안 북한식량난으로 인해 발생한 북한주민의 사망률 및 기타 생존 조건을 조사하여 식량난과 북한 주민의 생활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 1997. 9. 30.부터 1998. 9. 15.까지 11개월동안 북한식량난민 1,694명을 상대로 조사자 9명과 보조 요원 23명에 의해서 진행된 이 인터뷰 조사는 그 목적이 오직 북한 주민들이 식량난으로 인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피해상황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를 사실대로 알리기 위함이다. 외부세계가 제대로 접근하지 못한 북한의 기근의 정도와 실태에 대한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사였으며, 이후 1998. 10. 23.까지 2개월여의 보충조사를 통해 총 1,855명의 북한식량난민에 대한 조사결과를 "북한 식량난민 1,855명의 면담 조사 결과 보고서 북한 식량난의 실태"(1999. 12)로 출판하였다.

나. 중국 동북부지역 2,479개 마을에 대한 현지조사결과 '북한 식량난민의 실태 및 인권 보고서' (1999. 8)

1998년 11월 16일-1999년 4월 3일까지 약 5개월 동안 중국동북3성 내 29개 시·현에 속한 2,479개 마을 현지조사를 기초로 하여 중국에 거주하는 북한식량난민의 실태 및 인권상황을 파악하였다. 이 당시 북한식량난민 872명에 대한 직접 면담 조사를 하였고, 이후 약 100명의 북한식량난민에 대한 추가 면담조사가 이루어졌다.

다. 북한난민 1,027명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 '북한 주민의 북한사회·경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조사보고서 (2000. 6)

2000년 1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북한난민 1,027명을 대상으로 북한주민들이 북한사회와 경제 대하여 어떤 인식 및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 의식의 흐름을 파악하여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를 알아서 북한주민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남북한 정부 및 국제사회와 국내외 민간단체 및 일반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북한주민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라. 북한난민 1,027명과 남한주민 500명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 '남북한 주민의 통일의식 동시 비교조사' (2000. 6)

남북북단 55년만에 2000년 1월 18일부터 3. 31일까지 북한난민 1,027명과 남한주민 500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남북한 주민의 통일의식을 비교적으로 파악하여 통일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등을 짚어보았다.

마. 조-중 국경지역 답사보고서 (1차-20차 보고서 작성)와 국경지역 북한난민보고서

1996. 12. 23 - 현재까지 북한식량사정의 파악과 북한식량난민들의 대책 마련을 위하여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역인 연변·압록강·두만강 지역 등을 답사 방문하고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알려왔다. 국경지역 답사를 통해 최신의 북한소식과 난민상황을 알게 됨으로써 좀더 신속하게 난민을 구호하고 식량지원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4. 평화통일교육활동

2000. 3. 3.(금) - 2002. 11. 26.(금) 까지 총 3년간 매주 금요일마다 '통일미래를 준비하는 143회 연속대화마당'을 개최하여 평화통일교육의 새장을 열어가고 있다. 3년간 매주 열리는 통일대화마당을 통해 다가오는 통일미래를 준비하고, 통일에 대한 인식지평을 넓히며, 통일사회를 열어가기 위한 우리사회의 담론을 모아나가고, 새로운 통일교육의 모습을 만들어가고자 한다.

도 가. 제1기 통일대화마당 "통일미래를 이야기한다" (2000년 3월 3일 - 5월 26일)

둘 러 이 해 하 기

인류의 미래와 통일사회의 비전
문명의 전환기에서 바라본 통일
내안의 분단의식, 통일의 심리학

법률 (좋은벗들 이사장)/ 입재식
박노해 (시인)
이장호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북한역사와 사회의 이해
북한동포돕기 거리모금 캠페인 (일요일)

강정구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명동 주택은행 앞 (오후1시)

살 펴 이 해 하 기

분단 50년, 남북대화 50년

분단의 경제학, 통일의 경제학

남성적 질서의 분단과 극복

대포를 쟁기로-군비축소와 평화 문제

북한의 식량난과 북한난민 문제

숙박교육/북한의문화체험(북한영화 감상회)

내가 만난 한국사람들, 내가 만난 조선사람들 스티브 린턴 (유진밸재단 이사장)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질서

북한사회 어떻게 변할 것인가

21세기 통일미래를 이야기 한다.

정상모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임원혁 (KDI박사)

정현백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이철기 (동국대 국제관계학 교수)

정안숙 (좋은벗들 사무국장)

서동만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심포지엄 / 회향식

리영희 (한양대 명예교수)

서동만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나. 제2기 통일대화마당 "남북정상회담과 한국의 통일논의" (2000년 6월 2일 - 8월 25일)

다. 제3기 통일대화마당 "다시보는 북한사회 북한사람" (2000년 9월 1일 - 12월 29일)

라. 제4기 통일대화마당 "통일의 새지평을 열며" (2001년 1월 5일 - 3월 30일)

5. 출판활동

북한난민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알게된 북한식량난과 북한식량난민들의 실태 그리고 북한사회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일반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종 보고서와 정보를 책으로 출판하였다.

- ① 『1999 민족의 희망찾기』
 - ② 『두만강을 건너온 사람들』
 - ③ 『법륜스님의 통일로가는길』
 - ④ 『사람답게살고싶소』
 - ⑤ 『고난의 강행군』
 - ⑥ 『북한사람들이 말하는 북한이야기』
 - ⑦ 『통일미래를 이야기한다』
 - ⑧ 『북한사회 무엇이 변화고 있는가?』
 - ⑨ 『한국전쟁에서 남북정상회담까지』
- 등을 1999년부터 2001년 사이에 출간하였다.

6. 캠페인, 모금활동 및 홍보활동

시민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을 알리고 조그마한 정성이라도 모아서 북한동포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모금 및 캠페인 활동을 꾸준히 가져왔다.

가. 거리 캠페인과 모금활동

1996년 12월 15일 일요일 서울역 캠페인을 시작으로 매주 토·일요일 정기 거리캠페인을 진행하여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북한동포돕기를 홍보함과 동시에 성금도 모을 수 있었다. 그 외 어린이 날, 부처님 오신 날,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하여 거리캠페인을 진행하고 또한 북녘동포돕기 바자회·연등 만들기 등을 하며 모금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그리고 여러 시민·종교·운동 단체들과 함께 '북한동포돕기 옥수수 10만톤 보내기 공동 캠페인'을 하였고 한 달 동안 서울역에서 거제 사랑-북녘동포돕기 범국민 캠페인을 공동으로 진행했다. 지난 1998년 9월부터는 지금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명동 상업은행 앞에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김없이 젊은 학생·청년들이 북한어린이 및 북한난민돕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

매주 금요일 점심 한끼굶기 운동은 매주 금요일 점심 한 끼를 굶으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북녘 동포들의 고통과 절망을 나누어 가지는 대비심 운동이며, 굶은 점심 값의 돈을 모아 북녘 동포들에게 양식을 전달하는 대자심 운동이다. 또한 국제 기아·질병·문맹 퇴치 민간기구인 JTS와 함께 북한의 탁아소와 유치원에 있는 어린이 영양공급을 위한 북녘어린이 결연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나. 자료집 및 소식지 발간

북한의 식량난을 알리는 내용의 소책자 10여 종과 캠페인용 각종 전단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식량난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각종 정보를 신문 스크랩하여 신문기사 자료 모음집도 발행했다. 또한 주간 뉴스레터를 매주 발행하여 북한 관련 소식과 지원 현황 등을 각계에 알렸으며, 98년부터 새 형식의 「민족돕기와 통일」이란 이름을 소식지를 격월로 발간하였다. 사단법인 좋은벗들 설립이후에는 「좋은벗들」로 이름으로 바꾸어 발간하고 있다.

다. 비디오 테이프 자료 제작

국내외 방송사에서 보도된 것을 토대로 편집한 비디오 테이프 5종류, 『우리가 손을 내밀 때입니다』,

『북한 어린이의 실상』, 『지금 북한 사람들』, 『얼마나 더 죽어야 합니까?』 등을 제작하여 각계 각층에 배포하였으며 내부 교육용으로 『최근 북한 식량난민들』과 『라진·선봉 어린이 구호 사업』과 『중국에 거주하는 북한난민의 인권실태』, 『민족의 뿌리를 찾아서 고구려·발해·황일독립유적지 6차·7차 역사기행』, 『좋은벗들 3·4주년 기념식』 등 다양한 비디오를 만들었다.

라. 사진제작

북한의 식량난과 북한난민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 언론에 보도된 사진과 국제구호기구가 직접 찍은 사진, 국경접경지역에서 만난 북한식량난민들의 각종 사진 등을 인쇄·복사하여 각계 각층에 배포 및 발송하였다.

마. 인터넷을 통한 홍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oodfriedns.or.kr>)를 개설하여 좋은벗들의 각종 보고서와 소식, 143회 연속 통일대화마당의 강의내용 등을 전세계에 홍보하고 있다.

7. 통일기행과 역사기행 : 민족의 뿌리를 찾아서

1994년부터 매년 여름마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민족의 성산 백두산 및 고구려·발해·황일독립유적지 등을 답사하면서 역사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잊혀지고 왜곡되어 잊어버렸던 역사를 재인식하며 민족의 미래를 구상하는 역사기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대학생·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조·중 국경지역답사를 하고 고구려·발해·황일독립유적지 등의 역사현장에서 호연지기를 기르며 민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통일기행도 매년 여름 실시하고 있다.

8. 연대활동

국내외의 북한동포돕기운동단체들과의 연대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1997년 『민족화해를 위한 북한동포돕기 100만인 서명운동』과 『북녘동포 겨울나기 사랑의 옷 보내기 운동』, 1998년 『북한동포를 위한 국제 금식의 날 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였다. 아울러 1999년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 연대』, 2000년 『통일정진불교연대』 등 국내인권연대활동, 불교통일연대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IV. 좋은벗들의 사람들

1. 회원

후원금을 내주시는 회원 : 약 1,000여 명

2. 지역지부

부산 1개소

3. 사무국

가. 사무국장 : 정안숙

나. 교육부 : 김윤태 · 김재령

라. 총무부 : 임혜진 · 현희련 · 이선우

바. 중국파견 : 2명

다. 조사연구부 : 김정님

마. 국제부 : 강여경

사. 자원봉사팀 : 민영희 외 다수

4. 정책실

가. 정책실장 : 김성오(주식회사 인텔리서치 대표이사)

나. 정책위원 : 안식 (변호사) 외 3인

5. 임원

가. 이사장 : 법륜 스님 (JTS 이사장 / (사) 한국불교환경교육원 원장 / 정토회 지도법사)

나. 이사

(1) 박광서 :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 (사) 우리는 선우 공동대표

(2) 조민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3) 박순성 :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4) 최연 :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사무총장

(5) 김동균 : 법무법인 다산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6) 원희룡 : 법무법인 춘추 변호사 / 국회의원

다. 감사

(1) 정웅정 : 제2전국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2) 김우진 : 변호사

V. 1999년 - 2001년 5대 사업목표

1. 민족통일운동

2. 난민지원사업

3. 식량 · 의약품 지원사업

4. 평화 · 인권운동

5. 해외교포지원사업

VI. 2001년 특별사업

1. 국내 북측주민 지원사업 - 남한문화체험 프로젝트 / 남한사람과 함께하는 통일기행
2. 국내 이주노동자 지원사업 - 스리랑카 스님
3. 국내 외국인 난민 · 망명 신청자 지원사업 - UNHCR 실행단체 협약체결
4. 중국 조선족 등 재외동포 지원 · 조사 사업 - 한민족네트워크 프로젝트

사단법인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1. 단체명 : 사단법인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Women Making Peace)

2. 설립취지

'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 여성의 힘을 모아 민족의 자주적 통일과 아시아 지역의 평화, 나아가 세계 평화를 실현하고자 한다. 이런 목적 아래 평화정신을 사회의 보편적 가치로 확산시키고 사회전반의 평화행위 능력을 신장시키며, 생명중심의 평화문화를 일구고자 한다. 또한 민족통일과 평화실현의 조건과 방법을 연구하여 평화정책을 제시하는 동시에 민족통일과 평화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회행동을 펴나가며, 전문성을 갖춘 여성평화운동단체로서 국제여성평화조직과 연대하고 지속적으로 평화조직망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3. 설립근거(허가번호 제58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 10월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법인 설립을 허가받음.

4. 조직

- 이사장 : 이우정
- 공동대표 : 이김현숙, 정현백
- 이사회 : 김지영 외 10명
- 위원회 : 정책기획협의회 / 평화통일위원회 / 평화교육위원회 / 재정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 병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 회원 : 강남식 외 400여명

5. 주요활동

1) 주요 사업

- ① 통일평화사업 : 평화체제 구축과 민족통일을 위한 제반 활동
- ② 통일·평화교육사업 : 통일·평화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 ③ 통일·평화연구사업 : 통일과 평화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
- ④ 기타 본회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업과 국내외 연대활동

2) 연혁

- 1991. 남북한 여성과 일본여성들의 모임인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한국실행위원회 결성
- 1991. 1. 동경토론회 개최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 1991. 11. 서울토론회 개최 (주제 : '가부장제문화와 여성, 통일과 여성, 평화와 여성)
- 1992. 9. 평양토론회 개최 '민족대단결과 여성의 역할,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전후 책임, 평화창조와 여성의 역할'
- 1993. 4. 동경토론회 개최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전쟁책임과 전후보상, 아세아 평화, 한반도 통일의 실현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1996. 11.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한국실행위원회 회의
본회의 발전적 해체 결정
가칭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결성
- 1996. 12. 27 제1차 준비위원회 본회의 명칭 확정, 정관 초안 검토
- 1997. 3. 28 창립대회 개최
3. 28 밥나누기 사랑나누기운동 전개(북한식량보내기)
- 5. 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 여성의 날 기념식과 북한돕기 거리모금행사
- 6. 17~23 국제여성심포지엄 개최(여성단체연합과 공동주최)
- 8. 26 북한여성단체에 분유 26톤 전송식
- 10. 6 평화만들기 바자 개최
- 1998. 2. 20 제2차 정기총회
3. 1~30 10억의 사람들을 위한 부채탕감 서명운동 연대
- 4. 25 북한돕기 국제금식의 날 공동개최
- 5. 23 5.24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문화행사 공동개최 및 여성 300인 성명서 발표
- 10. 1 통일부 사단법인 설립 허가 받음
- 10. 20 남북여성교류 방안개발을 심포지움 "남북여성교류의 전망과 과제"
- 12. 19 재정경제부의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로 선정
- 1999. 1. 23 평화사랑큰마당 회원의 날 '느티나무에 가면 평화가 보인다'
- 3. 4 제3차 정기총회
- 4. 28 평화교육방법론 개발을 위한 심포지움 개최 '평화교육의 전망과 과제'
- 5. 25 '5.24 평화와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기념 심포지움 개최 '일미 신가이드라인과 한반도 위기'
- 6. 5 제5회 평화기행 '판문점'
- 6. 7~8. 9 제1기 평화운동 여성지도자 교육과정
- 6. 25 동북아 평화를 위한 국제평화운동가와의 간담회
- 8. 15 비폭력 평화공존의식 확산을 위한 8.15 평화캠페인
- 9. 3~4 갈등해소와 관용형성을 위한 워샵
- 10. 13 여성들의 통일의식 함양 방안 모색을 위한 좌담회
- 10. ~2000.2 여성평화운동론 정립을 위한 워샵

- 12.11 평화축제 "평화기금 마련을 위한 Peace Festival"
2000 1. 7 신년하례회
1.25 제4차 정기총회 개최
1.28 여성평화운동 정립을 위한 월샵
2.26-4.12 총선시민연대 활동
상반기 불평등한 SOFA 개정과 매향리 사격장 폐쇄와 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활동
4.20 여성들의 통일의식 조사결과 발표회
4.27-7. 6 여성평화아카데미(2000년 봄 강좌) 10회 진행
5.12 백두사업을 통해 본 국방계획의 문제점과 개선점 긴급토론회(참여연대 공동주최)
5.16 제1회 여성평화통일포럼 "남북정상회담- 여성, 무엇을 할 것인가" 선언문 채택
청와대, 통일부,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건의문 발송
5.22-5. 26 뉴욕 밀레니엄 포럼 회의 참석
6.17 판문점과 파주 금파리 평화기행(90여명)
6.22-6.25 오끼나와 국제여성 Summit(동아시아-미국 군사체제에 반대하는 여성 네트워크)
7.12 제2회 여성평화통일포럼 "남북여성교류, 어떻게 할 것인가"
7.25 독일통일과 갈등해소 월샵
7.27 여성인권유린, 불평등한 SOFA 개정을 위한 여성결의대회
8. 6 6.15선언 실천과 민족화해를 위한 2000 여성 평화·통일 어울
마당(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주최)
8. 14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정당·종교·시민사회단체 공동회의
-'6.15남북공동선언실천을 위한 여성들의 실천과제' 발표
9. 14 유네스코 평화문화의 해 서명 캠페인 서명서 전달
9. 19 여성인권보호조항신설을 위한 SOFA 정책간담회
(새움터,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주최)
9. 23 - 27 갈등해소전문가 훈련 프로그램-갈등, 분쟁 해결
10. 5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소식지 발행
10. 19 "여성과 평화" 국제심포지엄(아셈 여성분과 평화분과 공동주최)
11. 3-4 갈등해소전문가 훈련 프로그램-여성과 갈등해결
11. 7 21세기 한반도 평화·통일교육 방법론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국제 심포지움
11. 8 정대협 434차 정기수요 시위진행(한국여신학자협의회 공동주최)
11. 22 SOFA개정시 여성인권보호조항 신설을 위한 국회결의 촉구청원
11. 23 - 25 여성평화아카데미 2000 가을강좌
12. 6-9 "평화문화를 위한 아시아 여성회의"(베트남) 참석
12. 7-13 2000년 일본군 성노예를 재판하는 여성 국제 전범 법정 참석
12. 15 제3회 여성평화통일포럼
12. 17-18 갈등해소전문가 훈련프로-갈등해결 훈련을 위한 도구와 방법

네가닥철이 감동의 세상을 만듭니다



철이 있어 가능한 또 하나의 세상! 가슴 깊이 스며드는 철로의 선율을 만나면 철로 줄은 단순한 철이 아닙니다. 감동입니다.

네 가닥 철이 만드는 감동의 세상- 그 곳에 철이 있습니다. 포스코가 있습니다


 소리없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POSCO
WWW.POSCO.CO.KR

인권학술회의2001

국가인권위원회법안
대비표

2001. 2. 18.

이미경(국회의원)

■ 독립성 확보를 위한 조치

구 분	의원입법안	민주당안	법무부안	비 고
법안의 명칭 및 목적규정	(제1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국가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민주적 기본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정함	(제1조)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향상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	(제1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침해를 방지·구제하고 인권의식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함	
위원회의 명칭·설 립 형태	(제3조제1항)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소속없는 국가기구)	(제3조제1항)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소속없는 국가기구)	(제7조제1항) 차별행위 및 인권침해를 조사·구제하고 기타 인권의 옹호와 신장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위원회를 설립(비정부기구)	
위원회의 구성	(제4조, 5조, 10조)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인권위원 중 6인은 상임으로 하되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 3분의 1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 -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함	(제5조) - 위원장 1인과 2인이내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11인을 대통령이 임명 -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함 - 4인 이상을 여성으로 함	(제18조)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인권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 6인은 상임으로 함 - 위원중 6인은 국회가 추천하는 자를 임명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 3인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	
임기	(제6조) 5년 1차 연임	(제7조) 4년 1차연임	(제21조) 3년 1차 연임	
시행령	○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국무회의에 제출	법무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에게 대통령안 제출	법무부장관이 제정	

구 분	의원입법안	민주당안	법무부안	비 고
위원장의 직무	(제7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사를 주재하며 직원을 지 휘·감독 -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고, 국회의 요구가 있 는 때에는 출석, 보고·답변해 야 함 -국무회의 출석·발언권	(제6조) - 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국회의 요구가 있는 때 에는 출석, 보고·답변해야 함 - 국무회의 출석·발언권 - 소관업무에 관하여 의안의 제출 을 국무총리에게 건의할 수 있 도록 함	(제20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	
위원의 겸직금지	(제10조) 재직중 ①국회·지방의회 의원 ②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 방자치단체의 공무원 ③기타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음	(제10조) 재직중 ①국회·지방의회 의원 ②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공무원 ③기타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으며, 정당 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음	관련규정 없음	
위원 등의 책임면제	(제57조) 위원회, 인권위원, 직원등은 위 원회의 의결로 공개된 보고서 등 에 관하여 허위임을 인식하였거 나 중대한 과실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형사상 명예훼손 책임을 지지 아니함	관련 규정 없음	관련규정 없음	법무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삭제

구 분	의원입법안	민주당안	법무부안	비 고
예산	<p>(제20조)</p> <p>-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으로 보며,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원회의 예산요구액을 감액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p>	<p>(제6조제3항)</p> <p>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p>	<p>(제37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금 교부 의무화 - 출연금예산요구서는 법무부에 제출하고, 법무부장관의 조정금지 - 출연금의 요구·교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사무처의 설치	<p>(제16조, 17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임명 - 위원장이 소속직원의 인사권을 가짐 	<p>(제15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 사무총장 및 소속 직원 중 5급이상 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이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함 	<p>(제27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총장·직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임명 	
위원회의 조직·운영	<p>(제36조)</p> <p>이법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함</p>	<p>(제20조)</p> <p>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함</p>	<p>(제35조)</p> <p>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함</p>	

■ 위원회의 업무

구 분	의원입법안	민주당안	법무부안	비 고
위원회의 업무	(제22조) 2. 인권에 관한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하여 정부와 국회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7. 인권침해 또는 인권침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한 조사·연구 및 권고 9. 그밖에 인권보장 및 향상을 위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 ①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②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③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④인권에 관한 교육·홍보 ⑤인권 침해의 유형·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⑥국제인권조약에의 가입 등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⑦인권단체 등과의 협력 ⑧인권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협력 ⑨기타 인권의 보호장과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구금·보호시설 시찰과 개선사항에 관한 권고(제6호) 추가 -일반조항으로 “제1호 내지 제10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	
국가행정 기관과의 협의	(제20조) - 법령 제·개정시 미리 통고 - 관계기관등의 협의의무	(제22조) - 법령 제·개정시 미리 통고 - 국가행정기관(행정부) 등에 협의요청 시 해당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응해야 함	(제12조) -법령 제·개정시 미리 통고	
정부보고서 작성시 위원회 의견청취	(제26조) 인권규약 이행보고서에 대하여 국제 심의기구에 독자의 견 제출	(제23조) 정부보고서 작성시 위원회의 의견청취	(제14조) 정부보고서 작성시 위원회의 의견청취	
자료요구 및 사실조회	(제29조) 자료제출 요구 및 사실조회, 출석요구, 진술청취	(제24조) 자료제출 요구 및 사실조회	(제12조) 자료제출 등에 대한 협조요청	

구 분	의원입법안	민주당안	법무부안	비 고
청문회	(제30조) 청문회	관련규정 없음	관련규정 없음	
시설의 방문 및 조사	(제31조) - 구금시설 등의 직원은 인권위원 등이 시설수용자를 면담하는 장소에 입회하거나 면담내용을 녹음·녹화 할 수 없음	(제25조) - 구금·보호시설을 방문·조사 - 방문조사할 경우 위원회(소위원회 포함)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 인권위원과 시설수용자의 면담에는 당해 위원의 요청이 없는 한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할 수 없음 (절차·방법은 시행령에서 규정)	(제11조) - 시찰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	(제25조) 인권특위안과 같음	(제26조) - 위원회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문서로 설명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개선 또는 시정 권고와 의견표명, 이행내용 등을 공표	(제15조제1항, 제57조) - 권고를 받은 관계 국가기관 등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	
인권교육과 홍보	(제32조) -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과정 및 공무원채용·승진시험 등에 인권관련 내용 포함 의무화	(제27조) - 교육부장관과 초·중등교육과정에 대한 교육내용 협의 - 고등교육기관 장과의 협의 - 공무원 채용·승진시험 등에 대한 협의 - 사회교육단체·수용시설에 대한 권고	(제13조) - 「협의」를 「권고」로 변경	
인권자료실의 설치	(제33조) 인권특위안과 동일	(제28조) - 인권자료실을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 운영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위임	(제28조) 있음	

구 분	의원입법안	민주당안	법무부안	비 고
법원 및 헌법재판 소에 대한 의견제출	(제27조) - 위원회 조사 또는 처리한 내 용에 관한 재판시 사실상 및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 제출	(제29조) 위원회는 법원·헌법재 판소가 재판중인 사건에 대하여 법원·헌법재판소의 허가를 얻어 법률적인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음	(제16조) 인권특위안과 동일	

■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

구분	의원입법	민주당안	법무부	비고
위원회의 조사대상 및 진정인 적격	<p>(제35조제1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령에 의해 설립 또는 운영되는 기관 또는 다수인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인권침해 및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의한 평등권 침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헌법 10-22조, 헌법 제24-28조) - 진정인 적격 : 피해자 및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 	<p>(제31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대상 :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 및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의한 평등권 침해 -진정인 적격 : 피해자 및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 	<p>☞ 법무부는 인권위를 국가기관으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 수사기관 등의 직원 또는 다수인보호시설의 직원이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한 다음의 행위로 조사대상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p> <p>① 불법 체포 · 감금 ② 불법 압수 · 수색 ③ 불법적인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비밀침해 ④ 불법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사생활에 관하여 사진촬영공개 · 비밀누설 ⑤ 불법적인 구금 · 보호시설의 수용자나 피보호자 징계 · 징벌행위 ⑥ 폭행 · 협박 · 고문 및 치사상 ⑦ 사람을 공연히 모욕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⑧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p>	헌법 제24-28조 제외(선거권, 공무 담임권, 청원권, 재판받을 권리, 형사보상권)
차별행위 의 개념	<p>(제35조제2항)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사면되거나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병력 또는 그밖에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p>	<p>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사면되거나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병력을 이유로 고용·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 등이 공급이나 이용등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p>	<p>(제4조)</p> <p>「성적지향」을 「동성애등과 같은 성적경향」, 「사면되거나 실효된 전과」를 「실효된 전과」로 변경</p> <p>-나머지는 인권특위안과 동일</p>	차별행위의 범주를 고용·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 등의 이용이나 공급 등으로 한정

구 분	의원입법안	민주당안	법무부안	비 고
시설수용 자의 진정권 보장	(제3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공무원 등은 시설수용자의 진정서 등의 열람금지 - 자유로운 진정을 위해 이행해야 할 조치 등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함 	(제3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수용자가 진정을 원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위원 등은 구금·보호시설을 방문,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정을 접수 (시설직원의 참여·녹취·청취금지, <u>보이는 거리감시 가능</u>) - 소속공무원 등은 진정서 등 열람금지 - 자유로운 진정을 위해 이행해야 할 조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41조 · 42조제1항)	국정원과 경찰서 분실 등도 포함
진정의 각하	(제3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이 경과한 사건도 위원회의 결이 있으면 조사가능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 사건도 조사하도록 함) 	(제33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단, 진정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 -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가 제기한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가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중인 형법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독직사건) - 여성특위, 노동위원회 사건도 조사가능 	(제43조, 제4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이 경과한 사건은 예외없이 각하 	법무부와의 조율 과정에서 범위 축소(-수사기관 의 수사 종결사 건 조사 제한, -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사 건의 경우 민· 형사상의 공소시 효만료사건을 제 외하고위원회의 결로 조사 가능)

구 분	의원입법안	민주당안	법무부안	비 고
다른 구제절차 와 이송	(제38조) - 인권특위안과 동일 - 다른 국가기관에 이송하는 경우 시효계산은 위원회에 진정이 제출된 때 권리행사가 이루어 진 것으로 봄	(제34조) - 인권위의 조사 개시후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정 또는 고소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수사기관에 이송 - 진정을 다른 국가기관에 이송하는 경우 권리행사에 필요한 기간 또는 시효의 계산은 위원회에 진정이 제출된 때 권리행사가 이루어 진 것으로 봄	(제48조) 다른 국가기관에서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송 가능	
수사기관 과의 협조	(제39조) 민주당안과 동일	(제35조) 조사중에 범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사의뢰	(제59조제2항) 조사중 범죄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	
조사의 방법	(제40조) - 증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소환 및 신문권 - 출석요구, 진술청취, 진술서 제출요구 - 자료 등의 제출요구, 자료 영치 - 자료 등의 검증 또는 감정 -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제37조) - 의원입법안에서 증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소환 및 신문권 삭제 - 자료 영치 삭제 - 피진정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인권침해 행위나 차별행위를 행한 행위당사자로서 진술서만으로는 사안을 판단하기 어렵고 인권침해와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음	- 출석요구, 진술청취, 진술서 제출요구 - 자료 등의 제출요구, 자료 영치 - 자료 등의 검증 또는 감정 -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구 분	의원입법안	민주당안	법무부안	비 고
자료제출 거부사유의 범위	(제40조제8항) - 국가안전보장·외교관계, -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수사기관 또는 재판기관 등의 인권침해행위로 인 한 진정의 조사에 대해서 는 자료제출 거부 불가	(제37조) -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 사항 - 범죄수사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 려가 있는 경우 - 자료제출거부시 사실확인 요구	(제47조) -국가안전보장·국방· 통일·외교관계 -범죄수사·재판·형집 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 가 있는 경우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수 사기관 또는 재판기관이나 그를 보조하는 자의 행위에 의해 인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제기된 진정의 조사 에 대해서는 당해 인권침해 행위에 관련이 있는 자료· 물건의 제출 거부 불가 규정 은 법무부 반대로 삭제
동행 명령권	(제42조) 출석요구 불응시 위 원장이 동행명령장 발부	관련규정 없음	관련규정 없음	
피진정인 의출석요 구 불응	(제63조제3항제2호) 동행명령을 거부한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동행명령권은 없음 (제60조 2호) 진술서제출 및 출석 불응시 1천만원 과태료	(제73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방문·조사 방해, 면담내용 누설	(제63조제1항2호) : 조사 방해 (제63조제2항) 면담내용 누설 등(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58조) 천만원 벌금	(제71조) 500만원이하 벌금	

구 分	의원입법안	민주당안	법무부안	비 고
불이익금지 와 지원	(제59조) -진정제출이나 위원회 조사에 협 조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 을 받지 아니함	(제53조)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기타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 불이익을 받 지 아니함	(제55조) 인권특위안과 동일	
인권옹호 업무방해죄	(제63조제1항제3호) 선서후 허위 증언·감정한 자 처벌 (위원회 고발이 있어야 함)	제54조 타인의 인권침해사건에 관한 증거 를 인멸,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 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 처벌	(제65조)	
불이익금지 위반	(제63조제1항제4호) 진정, 증언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자 (5년이하 징역 5천만이하 벌금)	관련규정 없음	관련규정 없음	
비밀누설	(제63조제2항제7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57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민주당과 동일	
과태료	(제6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금시설에서 이행해야 할 조치 위반자, 출석요구·자료등의 제출 요구에 불응한 자, 위원회 질문에 답변을 거부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명칭사용금지 위반 ○ 과태료는 위원장이 부과하고 관 할 검찰청 검사가 징수 	(제6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석요구에 불응한 자(59조의 경우 제외) - 자료제출요구나 사실조회등에 응하 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등을 제 공한 자 ○ 유사명칭사용금지 위반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의 부과주체 및 절차 규 정 신설(안 제62조제3항) 	(제7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천만원이하 과태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석요구 불응 - 자료제출·사실조 회요구 불응·허위 자료 등을 제출 ○ 유사명칭사용 금지 위반 : 200만원이 하 과태료 	